

재정법제 자료 10-12-3

2010. 3. 30.

워크숍 일정

◇ 일 시 : 2010년 3월 30일 (화) 16:00~18: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구 성

사 회 : 현대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장)

제1주제 : 신성장동력 관련 입법과제

발표자 : 전용수 예산분석관(국회예산정책처)

토론자 : 오충중 사무관(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제2주제 :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IT분야)

발표자 : 권현영 교수(광운대 법대 과학기술법학과)

토론자 : 김도승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제3주제 : 녹색산업의 개념, 범위 및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발표자 : 조창현 박사(산업연구원 녹색산업팀장)

토론자 : 조홍식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고지숙 사무관(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

조외영 사무관(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목 차



()

I.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개요	9
1. 추진경과 및 녹색성장과의 관계	9
2. 추진전략	11
3. 추진체계, 일정 및 투자규모	14
II.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성공을 위한 입법 과제	20
1. 신성장동력 관련 입법 과제 현황	20
2. 입법 관련 보완이 필요한 사항	22
3.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고려사항	30
III. 신성장동력 분야별 입법 과제	32
1. 녹색기술산업 분야	32
2. 첨단융합산업 분야	37
3.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41
IV. 결 론	52
◎ 토 론 문 (오충종)	57



(IT)

()

1. IT 분야 신 성장동력 산업	69
--------------------------	----

2. IT 산업분야 재정법적 현안	74
3. 재정 관련법제 개선전략	82
◎ 토 론 문 (김도승)	85
■ () ,	
● 녹색산업이 주목을 받게 된 배경	93
● 녹색산업의 정의와 산업적 범위	95
● 녹색산업의 특성	103
● 녹색산업의 현황	106
● 녹색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109
● 시사점(재정법제적 이슈 관련)	119
◎ 토 론 문 (조홍식)	127
■	
◎ 토 론 문 (고지숙)	153
◎ 토 론 문 (조외영)	16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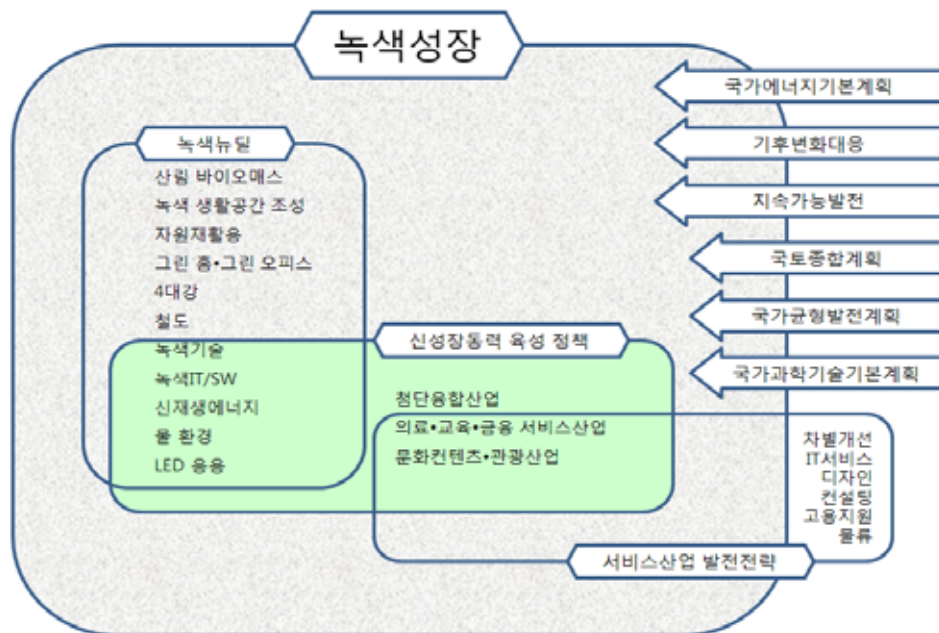
I.

1. 추진경과 및 녹색성장과의 관계

-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 및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활기찬 시장경제’의 구현을 위하여 신성장동력 확보,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천명
 -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제시
 -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기획단을 통하여 22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건의(2008. 9. 22)
 - 지식경제부 주도로 구성된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 KAIST 총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구성된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
 - 2009년 1월에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2009년 5월에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 회의(2009. 1. 13)에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확정
 - 200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진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과 기능별 대책(기술전략지도, 인력양성계획, 중소기업 지원계획) 발표(2009. 5. 26)

- 2009년 7월에 발표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신성장동력을 추진중
- ‘신성장동력’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관된 계획으로 추진 중임
 -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을 포괄하는 최상위 국가계획임
 - 신성장동력과 녹색뉴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등은 서로 중첩·보완 관계이나, 계획 수립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계획들 사이의 체계를 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그림 1]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 10.

- 연구개발(R&D)과 더불어 제도개선과 재정사업을 병행할 계획으로, 실질적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
 - 신성장동력 분야에 정부 R&D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 R&D시스템 개선을 통한 투자 효율화 및 분야별 맞춤형 우수전문 인력 양성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등과 더불어 공공수요 활용, 시범사업 등을 통한 조기 시장 창출 지원
 - 연구개발(R&D), 재정사업(비 R&D),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산업화 촉진 및 민간투자환경 조성 ([표 1] 참조)

[표 1] 신성장동력 추진과제의 정책수단별 분류

연구개발	재정사업	인력양성	제도개선	기타	합계
74	69	15	35	7	200

주: 기타는 계획수립, 국제협력, 민간투자, 인식 확산 등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2. 추진전략

가. 신성장동력 발굴의 기본방향

- 각 부처별 제안 사업중 ‘시장성’, ‘과급효과’를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고, ‘녹색성장 연관성’을 보조 척도로 활용하여 발굴
- 시장성속도에 따라 동력화 시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표 2] 참조)
 - 단기(3~5년) 신성장동력: 시장성속도가 높아 단기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 분야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

- 중기(5~8년 이내) 신성장동력: 핵심 원천기술 등 기술력이 있어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 및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한 분야
- 장기(10년 내외) 신성장동력: 시장형성은 초기이나 미래 잠재력이 높은 분야 및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녹색성장의 미래 원동력이 되는 분야

[표 2] 성장동력화 시기 및 육성 정책

단기 (3~5년 성장동력화)	중기 (5~8년 성장동력화)	장기 (10년 내외 성장동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조력·폐자원) · 방송통신융합산업 · IT융합시스템 · 글로벌 헬스케어 · MICE·관광 · 첨단 그린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태양·연료전지) · 고도 물처리 · 탄소저감에너지(원전플랜트) · 고부가 식품산업 · LED 응용 · 글로벌 교육서비스 · 녹색금융 · 콘텐츠·소프트웨어(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해양바이오연료) · 탄소저감에너지(CO₂회수활용) · 그린수송시스템 · 로봇 응용 · 신소재·나노 · 바이오제약·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용 기술개발 · 제도개선·투자환경 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술 선점 · 시장창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원천기술 확보 · 인력양성 등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시장조성자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에 집중
 - 이미 민간부문의 자체발전역량이 성숙된 분야(예: 메모리 반도체) 보다는 정부의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획기적인 시장창출과 발전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
 - 해당분야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전략 마련 ([표 3] 참조)

[표 3] 신성장동력 관련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정 부	민 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수요·제도개선 등 초기시장 창출, 고위험 원천 기술개발 등 ‘민간부문의 투자환경 조성’에 역점	상용화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활성화, 신규 고용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 필요

나.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

- 시장창출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법령,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 산업간 융복합화, 환경 변화에 따라 창출되는 새로운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규 마련 및 정비
 - 시장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산업적 관점에서의 제도개선 추진 및 세제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신설·확대
-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공공수요 활용, 시범사업 추진 등 예산지원
 - 공공수요 활용 등으로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초기시장 창출
 - 신규사업의 시장검증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 표준화 및 인증체계 조기구축 등 제도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 지원
 - 신성장동력 제품활용 촉진을 위해 표준·인증체계 마련·확산
 - 적극적인 시장조성을 위해 의무사용제 활용
- 혁신주도기술(Killer Application)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산업성장을 주도해나갈 핵심 응용기술을 확보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의 기술개발 주력

- 성과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신성장동력 분야의 R&D 투자 비중을 확대
-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R&D 자원을 신성장동력 산업에 집중 투자

-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
 - 모방·추격형 전략에서 ‘창조·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핵심 기초원천기술 확보
 - 미래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녹색 원천기술 및 IT·BT·NT 융합형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
 - 교육과학기술부의 R&D 자원을 신성장동력 부문에 집중 투자

- 신성장동력 분야별 맞춤형 우수전문 인력 양성
 - 중·장기 인력양성 기반 확충 및 신규 인력 수요 발굴·지원 (교과부)
 - 신성장동력 분야 선도 대학(원) 육성 및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 신성장동력 분야 전문대학원 설치·지원, 석박사급 인력 양성 트랙(Track) 다양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분야별 단기 인력은 부처별 소관 기술개발 산업과 연계하여 양성

3. 추진체계, 일정 및 투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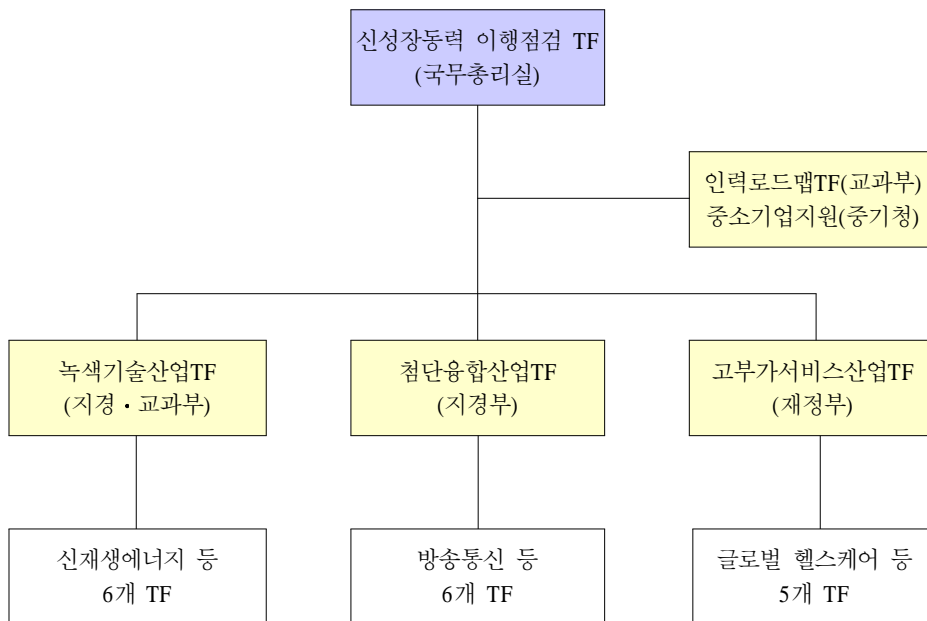
가. 추진체계

- 17개 신성장동력의 200개 추진과제는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를 중심으로 수행하며, 단계별 추진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이행실적을 점

검([그림 2] 참조)

- 신성장동력 범부처 TF: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분기별 이행·점검 TF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총괄 관리 및 추진 애로사항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해소
- 3대 분야별 TF: 간사부처 담당 국장을 팀장으로 각 동력별 주관·협조부처 과장을 팀원으로 구성하며,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독려, 추진 애로사항 발굴 및 문제해결, 단년도 추진계획 수립
- 17개 신성장동력별 민관 TF: 신성장동력별로 주관부처 중심으로 관련 기업체, 연구소 등을 포함한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수시로 상황 점검 및 민간 의견수렴

[그림 2] 신성장동력 추진체계



주: ()는 각 TF별 간사부처임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구성된 TF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추진과제와 기능별 대책을 수행 중임
 - 실질적으로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녹색성장 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이 총괄자료를 취합하는 형태임

- 지속적 제도개선 및 실적평가 추진
 - 신성장동력 추진실적 등을 정부부처 평가(특정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추진실적이 우수한 동력을 선정, 부처포상 실시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신성장동력 관련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총리실 주도로 과감한 제도·규제개선 추진

나. 추진일정

- 녹색성장 추진 체계에 맞춰 진행하며, 예산안 수립시 반영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에 반영
 - 재정사업은 2010년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추진과제별로 제시된 추진일정 및 완료시기에 맞추어 업무 추진
 - 2012년까지 48개 과제, 2013년에 127개 과제를 완료하여 2013년까지 175개 과제를 완료할 계획([표 4] 참조)
 - 향후 200개 과제의 추진·홍보시 ‘신성장동력 추진과제’임을 명시

[표 4] 신성장동력 추진과제의 정책수단별 완료시기

완료시기	연구개발	재정사업	인력양성	제도개선	기타	합계
2009				6	3	9
2010	3	3		5		11
2011	6	1		1		8
2012	5	10		4	1	20
2013	47	50	13	15	2	127
2014 이후	13	4	2			19
미정		1		4	1	6
합 계	74	69	15	35	7	200

주: 기타는 계획수립, 국제협력, 민간투자, 인식 확산 등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다. 투자규모

- 당초 신성장동력 관련 투자소요는 부처 요구안을 기준으로 24.5조 원으로 발표되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약 17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정¹⁾되었음
 - 신성장동력은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 중에서 ④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및 ⑥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포함되어 있음(그림 3) 참조)

1) 기획재정부는 17조원 투자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그림 3] 신성장동력 관련 투자 규모

<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

< 녹색성장 5개년계획 >

(단위: 조원)

구 분	투자계획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56.9
신성장 동력 창출	28.6
④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일부)	(17)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	
삶의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27.9
합 계	107.4

(단위: 조원)

분 야	투자소요
녹색기술산업	6.7
첨단융합산업	12.2
고부가서비스산업	5.5
합 계	24.5

주: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3대 전략 중 하나로 표현된 ‘신성장 동력 창출’은 『신성장동력』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임
 자료: 1.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2.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2009. 7.

□ 신성장동력 추진과제와 관련된 사업의 2009년도 예산은 2조 4,271 억원이며, 2010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9.3% 증가한 2조 8,967억 원 임²⁾([표 5] 참조)

2) 2009년도 추경을 반영한 예산액은 기획재정부가 제공하지 않았음

[표 5] 신성장동력 관련 2010년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분 야	신성장동력	2009 (A)	2010 (B)	증 감	
				(B-A)	(B-A)/A
녹색 기술 산업	신재생에너지	3,938	5,663	1,725	43.8
	탄소저감에너지	1,054	2,187	1,133	107.5
	고도 물처리	973	680	-293	-30.1
	LED 응용	473	335	-138	-29.2
	그린수송시스템	1,476	1,654	178	12.1
	첨단그린도시	1,847	1,795	-52	-2.8
	소 계	9,761	12,314	2,553	26.2
첨단 융합 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3,033	2,747	-286	-9.4
	IT융합시스템	2,567	3,213	646	25.2
	로봇 응용	881	1,096	215	24.4
	신소재·나노융합	2,233	2,697	464	20.8
	바이오제약·의료기기	1,623	1,542	-81	-5.0
	고부가 식품산업	299	763	464	155.2
	소 계	10,636	12,058	1,422	13.4
고부가 서비스 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321	413	92	28.7
	글로벌 교육서비스	594	655	61	10.3
	녹색 금융	-	56	56	순증
	콘텐츠·소프트웨어	2,836	2,723	-113	-4.0
	MICE·관광	123	748	625	508.1
	소 계	3,874	4,595	721	18.6
합 계	24,271	28,967	4,696	19.3	

주: 1. 2009년도 예산은 추경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 2010년도 예산은 세부과제의 공모 결과 등 집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10. 3.

II.

1. 신성장동력 관련 입법 과제 현황

-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제·개정 대상 법률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17개로 조사됨³⁾

[그림 4] 녹색기술산업 분야 예산 및 입법 과제 현황

분 야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 (17개)	1. 신재생에너지 2. 탄소저감에너지 3. 고도 물처리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첨단그린도시	7. 방송통신융합산업 8. IT융합시스템 9. 로봇 응용 10. 신소재·나노융합 11. 바이오제약·의료 기기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글로벌 헬스케어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15. 녹색 금융 16. 콘텐츠·소프트웨어 17. MICE·관광
추진과제 (200개)	79개	62개	59개
제·개정 대상 법률 (17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수도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상레저안전법 - 교통체계효율화법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총 7개)	- 방송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방송통신사업법 - 향만법 - 염관리법 - 식품산업진흥법 (총 6개)	- 의료법 - 이터닝산업발전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저작권법 (총 4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 10.

3) 2009년 8월에 조사한 결과임

- 2009년 9월을 기준으로 신성장동력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등 21개임([표 6] 참조)
 -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비롯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2009년 12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표 6] 신성장동력 관련 국회 계류 법률안 현황 (2009. 9. 23. 기준)

소관 위원회	제·개정 법률안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2009. 2. 27, 정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2008. 11. 7, 김성곤의원 등 33인), (2009. 1. 14, 이인기의원 등 25인)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2008. 11. 25, 배은희의원 등 21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6. 12, 이경재의원 등 11인), (2009. 7. 31, 이경재의원 등 14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2009. 4. 17, 최문순의원 등 10인), (2008. 12. 19,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5, 변재일의원 등 12인), (2009. 4. 2, 최문순의원 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3. 30, 이윤석의원 등 28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6. 15, 조배숙의원 등 29인), (2009. 9. 11, 장세환의원 등 21인)
지식경제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31, 정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29, 홍준표의원 외 171인), (2009. 7. 22, 손숙미의원 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12, 정부), (2008. 12. 19, 박준선의원 등 10인), (2009. 4. 3, 조원진의원 등 10인), (2009. 7. 1, 강창일의원 등 11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9. 6. 8, 정부)

주: 2009. 9. 23.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 10.

2. 입법 관련 보완이 필요한 사항

가. 적극적인 법률 제·개정 및 제도개선의 추진

□ 신성장동력 관련 200대 추진과제에서 제도개선으로 분류된 과제는 35개에 이르고 있음([표 7] 참조)

-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성장동력 관련 제·개정 대상 법률의 수는 17건, 시행령·고시 등 기타 제도개선 대상은 9건임
- 제도개선 추진과제 수에 비하여 각 부처가 파악하고 있는 개선 대상 법·제도는 적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대상 발굴이 필요함

[표 7] 신성장동력 관련 제도개선 대상 현황

		제도개선 추진과제 수	제·개정 대상 법률 수	기타 제도 개선 대상
녹색 기술 산업	신재생에너지	1	1	-
	탄소저감에너지	-	-	-
	고도 물처리	3	2	-
	LED 응용	1	-	3
	그린수송시스템	1	1	-
	첨단그린도시	3	3	5
	소 계	9	7	8
첨단 융합 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1	3	1
	IT융합시스템	1	1	-
	로봇 응용	-	-	-
	신소재·나노융합	-	-	-
	바이오제약·의료기기	1	-	-
	고부가 식품산업	1	2	-
	소 계	4	6	1

		제도개선 추진과제 수	제·개정 대상 법률 수	기타 제도 개선 대상
고부가 서비스 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8	1	-
	글로벌 교육서비스	2	1	-
	녹색 금융	6	1	-
	콘텐츠·소프트웨어	1	1	-
	MICE·관광	5	-	-
소 계		22	4	-
합 계		35	17	9

주: 기타 제도개선 대상은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고시 등의 제·개정 사항 및 관련 계획수립 등에 해당하는 사항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 10.

□ 특히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는 재정투자 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나, 개선 대상의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제도개선 추진과제 35개 중 22개가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에 해당하지만, 고부가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제·개정 대상 법률은 4개⁴⁾에 불과함([표 8] 참조)

[표 8] 고부가서비스산업 관련 제·개정 대상 법률 현황

대상법률	추진과제	개선할 내용
의료법	- 의료기관 국가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
	-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	등록 취소 요건 추가
	- u-Health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원격진료 허용범위 및 대상
이러닝산업 발전법	- u-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이러닝의 교육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조항 신설

4) 각 부처가 제출한 신성장동력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중 고부가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제·개정 대상 법률은 「의료법」, 「이러닝산업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작권법」임

대상법률	추진과제	개선할 내용
저탄소녹색 성장기본법	-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 배출권 거래소 설립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 마련
	- 녹색기업 인증제도	녹색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저작권법	- 저작권 보호 강화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단순 이용 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누구나 이 용가능하도록 개정(공정이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 10.

- 신규 서비스 및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된 법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 ·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의 개념 정의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

나. 추진체계의 정비 필요

-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는 ‘녹색기술 R&D 종합조정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 녹색기술개발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
 -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녹색성장계획과 부처별 녹색기술개발계획의 전략적 연계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녹색기술위원회에서는 부처별 녹색기술개발계획의 구성과 추진 내용을 종합 조정
- 2009년 2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정부안의 경우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리더십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민관 공동체제가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⁵⁾
- 또한 기후변화 대책 등과 관련한 법안 3건이 의원입법으로 계류중이며, 관련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이 상이함([표 9] 참조)
- 국회가 의결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정부안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음

[표 9] 녹색성장 관련 법안의 추진위원회 구성 비교

제명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안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대표발의 (제출)자	김성곤 의원	배은희 의원	이인기 의원	정 부
발의일	2008.11.07	2008.11.25	2009.01.14	2009.02.27
추진 위원회	제13조(기후변화 대책위원회) · 위원장:대통령 · 부위원장:국무총리 · 간사위원:환경부장관 제14조(실무위원회) · 위원장:국무총리실장 · 부위원장:지경부차관과 환경부차관 · 사무국(총리실소속) ·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13조(기후변화 대책위원회) · 위원장:대통령 · 부위원장:국무총리 · 간사위원:지경부장관 제14조(실무위원회) · 위원장:국무총리실장 · 부위원장:지경부차관 · 사무국(규정 없음) ·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13조(국가기후변화위원회) · 위원장:대통령 · 부위원장:국무총리 · 간사위원:규정 없음 제14조(실무위원회) · 위원장:국무총리실장 · 부위원장:규정 없음 · 사무국(총리실소속) · 분과위원회 제15조(타 위원회와의 관계) ·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국가기후변화위원회 산하에 둠	제14조(녹색성장위원회) · 위원장:국무총리와 민간위원 공동 · 간사위원:대통령실 녹색성장 담당 수석비서관 · 분과위원회(임의조항) - 위촉위원으로 구성 - 녹색성장기획단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지원 제20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 · 임의조항 · 지자체 장의 소속으로 구성

자료: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후변화대책 및 녹색성장 관련 제정법률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2009. 4.

5)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후변화대책 및 녹색성장 관련 제정법률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2009. 4.

-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은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주관 TF 등으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의하면 녹색성장 관련 정책은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단이 조정하며([그림 5] 참조), 신성장동력 관련 R&D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조정하는 등 추진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음
 - 신성장동력은 주관부처와 협조부처가 추진과제를 수행하며, 국무총리실의 범부처 TF를 비롯하여 분야별 TF 위주로 추진실적을 관리하는 체계임

[그림 5]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단의 구성 현황

●● 녹색성장위원회



●● 녹색성장기획단



-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의견조정 및 합의 도출을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부처간 의견조정 및 추진실적의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 또는 기획재정부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기후변화에너지센터 신설 방안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음
 -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지원,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등의 업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두기로 하였음([표 10]의 (7) 참조)
 - 온실가스 통계 및 사업장 관리와 관련하여 관계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표 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

<p>(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국가전략이 수립·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와 6개월 이내에 중앙 및 지방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함.</p> <p>(2) 녹색산업투자회사는 출자총액, 신탁총액 또는 자본금의 60% 이상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출자 또는 투자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p> <p>(3)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에 인증 및 확인을 신청해야 함.</p> <p>(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100분의 30</p>
--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2010년 2월 17일부터 2010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되었음

- 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함.
-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별표 3과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장으로 함.
 - (6)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9월말까지 센터를 통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7)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지원,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둔.
 -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목표를 수립해야 함.

자료: 법제처, 정부입법추진포털, 2010. 3.

다.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계획의 구체화 필요

- 신성장동력 추진실적 등을 정부부처 평가(특정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추진실적이 우수한 동력을 선정, 부처포상 실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에서는 ‘특정평가’를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신성장동력 추진실적을 특정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9조)
 -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은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국무총리가 수립하며, 매년 3월말까지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제3항)

- 특정평가에서 신성장동력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2010년도 시행계획에 신성장동력 추진실적 점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참고로 2009년도 시행계획에서는 특정평가 대상으로 녹색성장이 명시되어 있으며, 2010년 평가부터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중앙추진계획 상의 과제에 대해서 체계적·포괄적으로 평가할 계획임
 - 2009년도 시행계획에서는 녹색성장 관련 평가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데([표 11] 참조), 2010년도 시행계획부터는 신성장동력 추진실적과 관련한 배점을 명시하는 등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표 11] 2009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녹색성장 특정평가 관련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구 분	배 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형성	15	계획수립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 정책목표·수단·효과 등에 대한 정책분석의 적절성 ○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정책집행	25±3	시행과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의 충실성 ○ 정책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 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노력
		정책확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교육, 대국민 소통·홍보, 녹색생활 확산 노력(가감점)
정책성과	60	성과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달성도 ○ 정책효과성

자료: 국무총리실, 『경제위기 극복과 국정성과 향상을 위한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09. 3.

- 신성장동력사업 중 기존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필요
 - 신성장동력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

3.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고려사항

가.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 연구개발 및 창의적 노력의 결과물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
 - 연구개발 결과 만들어지는 원천기술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산업화하는 경우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함
 - 높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며⁷⁾, 소프트웨어산업과 콘텐츠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없이 발전할 수 없음

- 신성장동력의 콘텐츠·SW 분야 추진과제에 저작권 강화⁸⁾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강화는 미흡
 - 2009년 5월에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⁹⁾」에도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7)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3%로 세계평균(41%)보다 높으며, OECD 30개국 중 23위에 해당함.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액은 약 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BSA·IDC, 「2008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조사 보고서(Global Software Piracy Study)」, 2009. 5.)

8) 주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며, 관리번호는 16-⑤임

9) 기획재정부 등,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9. 5.

-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 등 저작권 보호조치의 강화와 더불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홍보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국제규정을 고려한 수출산업화 전략 수립

- G7사업으로 추진된 차세대 반도체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상계관세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음
 - 미국 상무부는 2003년 7월 반도체 부문의 정부지원에 따른 미국 DRAM 산업 피해를 이유로 상계관세(Hynix 0.14% 등)를 부과¹⁰⁾
-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과 관련하여 WTO의 보조금 규정 저축 등에 대한 경쟁국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음
 - 당시 각 부처는 차세대 성장동력이 수출증대, 부가가치생산, 고용창출 등에 미치는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
 - 정부가 주도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은 WTO의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되어 수출 주력산업이 되는 시기에 통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음¹¹⁾
-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하여 WTO 체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검토하고, 범부처적으로 통상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10)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08. 2.

11)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08. 2.

- 정부가 보조금 성격을 갖는 연구개발정책(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WTO 보조금협정과의 저촉 여부에 대한 통상법적 검토를 통해 미리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구체적으로는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WTO 규정 등에 따른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성장동력사업의 대외 홍보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III.

1. 녹색기술산업 분야

가. 제·개정 대상 법률 현황

- 녹색기술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비롯한 7개로 조사되었음([표 12] 참조)

[표 12] 녹색기술산업 분야 관련 제·개정 대상 법령

관리번호	추진과제	개선대상	소관	개선방법	예정시기	개선할 내용
1-⑧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RPS) 도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경부	개정	2012	RPS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3-③	수도기자재 위생안전인증제도 도입	수도법	환경부	개정	2009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근거조항 신설

관리 번호	추진과제	개선대상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3-⑤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기술 고도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2009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근거법령 제정
3-⑦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보급 확대					
5-⑫	레저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개정	2010	수상레저산업활성화를 위한 수상레저기구 및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6-⑦	ITS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법령 개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부	개정	2009	ITS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법령개정 ITS기본계획, 지방계획 수립 ITS표준·품질인증제도 도입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 등
6-⑨	공간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국토부	개정	2009	공간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공간정보 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국토부	개정	2009	

자료: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2009. 8.

- 2009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 중 녹색기술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육성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법률안은 6개임([표 13] 참조)

[표 13] 녹색기술산업 분야 관련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현황 (2009. 9. 23. 기준)

법 른 안	신성장동력 관련 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31, 정부)	전기사업자 등 에너지 공급사업자에게 일정 양 이상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

법 률 안	신성장동력 관련 내용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12, 정부), (2008. 12. 19, 박준선의원 등 10인), (2009. 4. 3, 조원진의원 등 10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것만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7. 1, 강창일의원 등 11인)	해수담수화로 생산된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상수원의 범위에 해수를 포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9. 6. 8, 정부)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 10.

나. 고도 물처리 관련 인증제도 도입 등의 근거 마련 필요

- 고도 물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막여과 정수처리기술의 개발, 수도관망 관리기술 개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에 2013년까지 7,681억원을 투입할 계획임([표 14] 참조)

[표 14] 고도물처리산업 투자계획: 2009-2013년간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						
막여과시스템 응용기술개발	50	133	144	144	-	471
수도관망 관리기술 고도화	64	982 (968)	968 (968)	968 (968)	-	2,982 (2,904)
수도기자재 위생안전인증제도 도입	-	34	34	4	4	76
먹는샘물 품질인증제 도입	- (51)	35 (90)	35 (310)	35 (510)	35 (210)	140 (1,171)
소 계	114 (51)	1,184 (1,058)	1,181 (1,278)	1,151 (1,478)	39 (210)	3,669 (4,075)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친환경 대체용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기술 고도화	17	17	-	-	-	34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제도개선	-	-	-	-	-	-
하수처리수 재이용 보급확대	299 (121)	547 (149)	530 (149)	613 (158)	530 (149)	2,519 (577)
폐수처리수 재이용 보급확대	225 (275)	225 (275)	180 (220)	180 (220)	180 (220)	990 (1,210)
소 계	541 (396)	789 (424)	710 (369)	793 (378)	710 (369)	3,543 (1,787)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						
수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99 (48)	96 (42)	96 (42)	89 (39)	89 (39)	469 (210)
합 계	754 (495)	2,069 (1,524)	1,987 (1,689)	2,033 (1,895)	838 (618)	7,681 (6,072)

주: 국비 기준이며, ()안은 지방비 및 민간투자임
 자료: 환경부, 2009. 7.

- 막여과 정수시설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관련 기술개발이나 상용화 정도는 낮은 편임
 - 2006년에 「수도법」 제9조를 개정하여 막여과 시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막여과 상용화기술의 정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설치기준고시」를 마련하였음
 - 막여과 시설설치 및 운전과 관련된 공정설계 및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이 부족하고, 핵심 계측장비와 센서 등의 국산화율도 낮은 편임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상하수도서비스 국제표준’ 제정과 더불어 상하수도서비스의 국제화, 표준화, 개방화 압력이 커지고 있음
 - 정부는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 제고를 위하여 “수도기자재 위생안전 인증제도”의 도입을 고려중이며, 「수도법」의 개정과 같

은 법·제도 개선이 필요

- 막여과 방식의 도입 및 수도관망 관리 선진화 등 수도물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정부는 수도물 품질 향상을 위해 수도관망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표준지침」의 제정이 필요함

- 최근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수처리 및 정화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촉진과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약함
 -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와 더불어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촉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하·폐수처리장에서 중·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하·폐수재이용사업이 확장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 BTO방식과 같이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할 법적 기반이 정비되어야 함

다. U-City 관련 자가통신망의 연계 허용 문제

- 첨단그린도시 분야에 포함된 한국형 U-City 모델창출 부문과 관련하여 자가통신망¹²⁾의 연계 활용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부처간 의견 조정 필요
 - 현재 U-City를 추진·계획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에 의해 자가통신망을 선택하여 도입·운영하는

12)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관로, 선로, 통신장비 등)

것은 가능함

- 그러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 및 제49조에 의하여 자기전기통신설비를 연계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음

- 자가통신망의 연계를 허용할 경우 민간통신사업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통신 인프라를 중복 구축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국토해양부 및 자가통신망을 구축·운영 중인 지자체는 자가통신망이 초기 구축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나, 회선 수요 증가에 따른 임대비용 증가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자가통신망 구축이 유리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가통신망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자가통신망의 연계 이용을 허용할 경우, 자가통신망 소유 기관이 필요 이상의 통신망을 구축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자원낭비와 중복 투자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민간통신사업자의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2. 첨단융합산업 분야

가. 제·개정 대상 법률 현황

- 첨단융합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방송법」을 비롯한 6개로 조사되었음([표 15] 참조)

[표 15] 첨단융합산업 분야 관련 제·개정 대상 법령

관리 번호	추진과제	개선대상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7-③	방송통신 통합법제 정비 및 제도개선	방송법	방통위	개정	2009~2010	유료방송 의무편성채널 규정 개선 및 방송 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통위	제정	2009~2010	방송통신관련 법령의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하고, 방송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방송통신사업법	방통위	제정	2011	방송통신에 대해 수평적 규제를 적용하여 단일 사업법으로 정비
8-⑩	IT융합시스템 관련 법제도 개선	항만법	국토부	개정	2009	항만컨테이너에 대한 RFID부착의무화
12-③	친일염 세계 명품화 전략	염관리법	농식품부	개정	2009	『소금산업법』으로 전부 개정, 소금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조항 신설
12-④	고부가 식품생산을 위한 첨단식품 클러스터 조성	식품산업진흥법	농식품부	개정	2009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근거조항 신설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2009. 8.

- 2009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 중 첨단융합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육성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법률안은 7개임([표 16] 참조)

[표 16] 첨단융합산업 분야 관련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현황
(2009. 9. 23. 기준)

법률안	신성장동력 관련 내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6. 12, 이경재의원 등 11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의무재송신 제외 규정을 삭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7. 31, 이경재의원 등 14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2009. 4. 17, 최문순의원 등 10인), (2008. 12. 19, 정부)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3. 30, 이윤석의원 등 28인)	제조염과 수입염에 대한 품질검사제도를 도입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6. 15, 조배숙의원 등 29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의 설립을 명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9. 11, 장세환의원 등 21인)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 10.

나. 천일염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

- 고부가식품 분야에 포함된 천일염 세계 명품화 세부과제와 관련하여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
 - 천일염은 1963년 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45년간 광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는 식품이 아니었지만, 2008년 3월부터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인정되어 천일염은 수산물로, 천일염 생산자는 어업인으로 규정
 -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산 식용천일염 유통은 식품위생법을, 수입 천일염 유통은 대외무역법과 식품위생법을, 공업용 천일염 유통은 염관리법을 각각 적용

- 식품산업 행정 일원화를 위해 소금산업 관리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2009. 3.)

-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소금산업법」 개정 필요
 - 소금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7년 190만톤(75.3%)이었던 수입 소금은 2008년에는 274만톤(83.1%)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표 17] 참조)
 - 특히 수입 소금 가운데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큰 중국산 천일염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천일염 생산량(29만 6천톤)과 거의 맞먹을 정도인 27만 9천톤이 수입됨
 - 가격 또한 중국산 소금이 kg당 평균 43원으로 국내 천일염의 산지가격(kg당 200원)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국내산 천일염의 가격폭락을 초래하는 한편, 수입된 값싼 소금의 상당량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불법 유통되면서 품질이 뛰어난 국내산 천일염에 대한 인식에까지 악영향을 미침
 - 현행 염관리법으로는 이러한 원산지 단속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통 질서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음
 -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소금산업의 육성, 식품생산에 적합한 품질관리, 연구개발, 원산지 표시제도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금산업 육성법」의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표 17] 연도별 소금 수급현황

(단위: 천톤, %)

		1997	1999	2001	2005	2007	2008	
수 요		2,560	2,862	3,090	3,174	3,208	3,298	
공급	국 내 업	천일염	335	286	261	296	296	384
		기계염	281	231	240	173	159	159
		부산물염	6	16	16	7	11	13
		소 계	622	533	517	476	466	556
	수입염		1,896 (75.3)	2,360 (81.6)	2,575 (83.3)	2,698 (85.0)	2,742 (85.5)	2,742 (83.1)
	합 계		2,518	2,893	3,092	3,174	3,208	3,298

주 1: 각 수치는 일반가정용과 식품공업용 합계임

2: ()내는 총 공급량 대비 비중

자료: 대한염업조합, 각년도

3.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가. 제·개정 대상 법률 현황

-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의료법」을 비롯한 4개로 조사되었음([표 18] 참조)

[표 18]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관련 제·개정 대상 법령

관리 번호	추진과제	개선대상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13-㉔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의 단계적 도입	의료법	복지부	개정	2010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
13-㉕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			개정	2009	등록 취소 요건 추가
13-㉖	u-Health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개정	2009	원격진료 허용범위 및 대상

관리 번호	추진과제	개선대상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14-㉓	U-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이러닝산업 발전법	지경부	개정	2010	이러닝의 교육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조항 신설
15-①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총리실 (녹색위)	제정	2009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 등 신설 녹색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15-②	배출권 거래소 설립					
15-⑨	녹색기업 인증제도					
16-⑤	저작권 보호 강화	저작권법	문화부	개정	2010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단순 이용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개정 (공정이용)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2009. 8.

- 2009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 중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육성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법률안은 8개임 ([표 19] 참조)

[표 19]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관련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현황 (2009. 9. 23. 기준)

법 률 안	신성장동력 관련 내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29, 홍준표의원 외 171인)	의료기관 등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7. 22, 손숙미의원 등 12인)	사업실적이 없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를 할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2009. 2. 27,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등

법 률 안	신성장동력 관련 내용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2008. 11. 7, 김성곤의원 등 33인), (2009. 1. 14, 이인기의원 등 25인)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2008. 11. 25, 배은희의원 등 21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5, 변재일의원 등 12인), (2009. 4. 2, 최문순의원 등 10인)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 10.

나. 글로벌 헬스케어 및 글로벌 교육서비스 관련 정비대상 법률

□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자본조달 수단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 의료기관 자본조달경로 다양화를 위한 제도정비

- 비영리 의료법인이 신규·재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사항(2008. 10월 국회 제출)
-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영리법인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사항(현재 상임위 계류중)
-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으로 경영 합리화 및 자원활용의 효율성 제고: 「의료법」 개정 사항(2010년 계획)

- 의료기관 국가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 종전의 의료기관 평가를 자율평가에 의한 국가인증제로 전환: 「의료법」 개정 사항(2010. 7월 계획)
 - 해외환자 의료분쟁 대응제도 구축
 - 해외환자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법상 조정·중재 제도’를 분쟁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사항(2009년 계획)
 - u-Health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 허용(「의료법」 제34조),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약사법」 제50조) 등 제도적 기반 조성(2009년 계획)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 추진(2011년 계획): 별도 법률 검토 중
 - u-Health 활성화 기반 조성
 - 「의료법」 개정 등 법·제도적 기반 조성(2009년 계획)
 - u-Health를 활용한 해외의료서비스 진출
 - 해외 자국민 및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2009년 마련, 2010년 시행 계획)
- 글로벌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U-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
- 「U-러닝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2010년 계획)

다. 녹색금융 활성화 관련 검토

(1)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의 보완 필요

- 정부의 녹색산업 금융지원 정책은 공공부문(정부, 금융공기업 등)의 직·간접 지원과 민간금융기관의 녹색금융 활성화로 구별할 수 있음([표 20] 참조)

[표 20] 녹색산업 금융지원의 정책 방향

공공부문의 직·간접 지원 정책	민간금융기관의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
-녹색 R&D 사업에 재정지원 확대 -산업은행의 출자로 녹색펀드 조성 -연기금의 녹색펀드 투자에 대한 참여유도 -중소기업은행은 녹색기업에 대하여 대출 한도, 금리 등을 우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하여 금리, 수수료 등을 우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녹색프로젝트 사업자가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에 대해 보증료율 우대	-금융기관의 녹색채권·녹색예금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자소득 비과세)을 통하여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녹색프로젝트에 대출하도록 유인 -녹색 사회적 책임투자지수 개발, 녹색 리그 테이블 발표,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녹색경영 정보공시 강화 등을 통하여 민간 녹색금융상품 활성화

- 녹색산업은 불확실성이 높고, 외부효과¹³⁾가 크므로 공공부문의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특정 녹색산업 또는 녹색기업에 대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경우 공공지원에의 의존성이 커지고, 자체 경쟁력 강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초기단계의 녹색산업 및 창업초기 녹색기업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13) 사적 수익보다 사회적 수익이 크게 나타남을 의미함

- 공공부문 지원수단 중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은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수단임
 - 녹색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효과 있는 정책수단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임
 - 그러나 성장·성숙 단계의 녹색산업이나 녹색기업이 지속적으로 신보·기보의 보증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보증지원을 함에 있어서 녹색기업에 대한 심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임

-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이 세제지원(이자소득 비과세)되는 녹색채권·녹색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이 녹색 중소기업 등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 또는 제도장치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의 자금이 녹색금융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녹색산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투자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허위·과장 광고의 차단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2) 탄소배출권시장의 부작용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탄소배출권시장은 탄소배출에 대한 총량규제의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함
 - 전국적으로 배출가능한 탄소총량을 법률로써 규제하고, 그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적정 발행규모를 결정해야 함

- 탄소는 관련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대상에 대한 정교한 기준이 필요할 것임

-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총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탄소배출총량에 대한 연차별 규제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산업과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배출되는 탄소의 총량에 대한 정확한 사전조사 필요

-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따른 시장의 유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임
 - 탄소배출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증권)에 해당한다면,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할 것임
 - 탄소배출권이 금융투자상품(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고 별도의 시장을 개설해야 할 것임
 - 다만,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함
 - 따라서 탄소배출권의 개념정의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입법조치가 있어야 함

□ 탄소배출권시장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 탄소배출권시장은 탄소배출총량을 규제하되, 각 기업의 배출량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제도임
-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탄소배출총량 규제의 확실성과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라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특정 기업이 탄소배출권의 보유량을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경쟁 기업의 시장진입과 영업활동을 막음으로써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이 거래될 경우 시장교란은 더욱 클 수 있음
 - － 특히, 외국투자자들이 탄소배출권을 대량 매입할 경우, 우리나라 탄소배출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또한, 탄소배출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업 등의 탄소배출 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라. 콘텐츠·SW 관련 법·제도 등 환경정비 필요

□ 콘텐츠 창작 기반 및 유통환경과 금융지원 제도, 범정부적 지원체계 등과 같은 법·제도적 환경의 정비 필요

□ 2009. 2. 24일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4월 17일 상정된 후 계류 중임

- 동 법률안은 제명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하면서, 콘텐츠 제작 활성화, 재원으로서 ‘정보통신진흥기금’ 활용, 콘텐츠 거래

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문화산업진흥법」과의 중복 규정 및 규정 내용의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거래인증제의 참여율 제고, 서비스 품질 인증기관의 법률에 의한 지정 등의 의견을 제시함
 - 동 법률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적절하게 수정하고, 콘텐츠 진흥 정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현재까지 콘텐츠 해외수출 확대를 위하여 특성화된 보증 및 용자 지원이 2009년 2월 「문화산업진흥법」개정, 2009년 5월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는 확보하였으나, 일부 보증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
- 특히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콘텐츠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필요
- SW산업은 불안정한 시장 환경과 고급 SW인력 부족, 기술력 취약, SW 시장 창출 역량이 미흡
- 2009년 이후 SW인력양성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을 실시하였으나, 단기간의 투입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
 - 지원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선제적인 분야의 지원 및 역량확보를 위하여 적재적소의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제고할 필요

- SW의 불법복제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홍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SW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마. MICE¹⁴⁾ · 관광 관련 중장기 추진체계의 정비 필요

-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s) · 관광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 수 등 관광비중은 저조
 -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도 OECD 30개국 중 30위 수준이며, GDP 대비 MICE 산업 비중은 0.45%에 불과
- MICE 산업은 국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가 달라 전반적인 추진체계가 미확립되어 있으며, 범정부적 지원체계가 미흡
 - 대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국제행사 유치 후 컨벤션센터 건립 등 건설사업에 추진되어 있으며, 건립 이후의 활용 방안이 미흡하여 수익성 미비
 - 중장기적인 MICE 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합적인 산업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부존재
 - MICE · 관광산업의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과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하여 독자적인 관리 산업으로 육성하여 추진할 필요
- MICE · 관광 산업의 사업간 연계성 미흡으로 숙박 · 교통 · 상업시설 등이 연계되지 않아 지역 전반적인 관광수요의 확대에 이어지지 못함

14)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s

- 도시 중심에 있는 건축물은 서울 COEX, 부산 BEXCO 등 일부에 지나지 않아 국제행사 참관 고객의 상업시설 및 숙박시설 이용 불편으로 관광 확대가 미흡
 - 컨벤션 시설 건립 시 도심 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컨벤션시설의 상업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컨벤션 시설 자체의 사업개발 유도 필요
- 관광 산업의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생태관광, 도서 개발 등의 사업이 환경친화적으로 실시되지 못함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 필요
- 생태관광이나 지역의 관광지 개발 사업이 매년 집행부진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지연에 따른 측면도 많은데, 이는 사전계획 수립이 환경과의 조화보다는 개발에 초점이 있기 때문
 - 향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표 21] 신성장동력 입법과제 관련 정책 제언 요약

신성장동력	정책 제언
고도 물처리	품질인증,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등과 관련된 법적 기반 정비 필요
첨단그린도시	통신 인프라의 중복 구축 등을 고려하여 자가통신망의 연계 활용 허용 여부에 대한 조정 필요
고부가 식품산업	천일염 관련 원산지 단속 규정 미비에 따른 유통질서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기관 자본조달 경로 다양화 및 u-Health 활성화에 필요한 법률 개정 필요
녹색 금융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부작용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신성장동력	정책 제언
콘텐츠·소프트웨어	콘텐츠 창작 기반 및 유통환경과 금융지원 제도, 범정부적 지원 체계 등과 같은 법·제도적 환경 정비 필요
MICE·관광	범정부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며 관련 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육성방안 수립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 10.

IV.

-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대상 법률 및 제도의 적극적인 발굴과 제·개정 노력 요구
 - 제도개선 추진과제 수에 비하여 각 부처가 파악하고 있는 개선 대상 법·제도는 적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대상 발굴이 필요함
 - 특히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는 재정투자 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므로, 법·제도 개선 대상의 파악을 위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총리실 주관 TF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신성장동력 추진체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정비되었으나, 조정체계 미흡
 -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의견조정 및 합의 도출을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부처간 이견조정 방식, 개발결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등 과거 유사 정책의 수행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신성장동력 추진실적은 정부부처 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추진실적이 우수한 동력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인데,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계획 및 평가항목은 보다 구체화
 - 신성장동력 추진실적을 특정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신성장동력 추진실적과 관련한 배점을 명시하는 등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신성장동력사업 중 기존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
 - 신성장동력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

- 신성장동력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
 - 높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며, 소프트웨어산업과 콘텐츠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없이 발전할 수 없음
 -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 등 저작권 보호조치의 강화와 더불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하여 WTO 체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검토하고, 범부처적으로 통상분쟁에 대비
 -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WTO 규정 등에 따른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녹색기술산업 분야 및 첨단융합산업 분야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 고도 물처리와 관련해서는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촉진과 초기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필요함
 - U-City 관련 자가통신망의 연계 허용 문제는 통신 인프라가 중복 구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고부가식품 분야와 관련하여 천일염 세계 명품화를 위하여 원산지 단속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녹색금융, 탄소배출권 등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사항의 발굴과 환경정비
 - 글로벌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자본조달 수단 확대,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해외환자 의료분쟁 대응제도 구축 등 다양한 법·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녹색금융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한 심사체계의 확보와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탄소배출권시장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총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하며, 탄소배출총량에 대한 연차별 규제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특히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이 거래될 경우 시장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탄소배출권시장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발표문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09년 10월에 발간한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에서 발췌·재편집하여 작성하였으며, 일부 내용만 발표 시점의 자료로 현행화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용수 예산분석관(02-788-4628, yongsu@nabo.go.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토 론 문

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오충중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사무관)

1

추진배경

- 21세기 전세계적 자원·환경 위기 및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미래준비와 녹색성장의 본격 추진 필요**
-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단기위기 대책과 더불어 **포스트 금융위기**에 대비한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 제시 필요**

추진경과

- 민간 주도의 **신성장동력기획단**이 건의한 제조업 중심의 **22개 신성장동력**을 기초로 서비스 분야의 성장동력을 보완
- 시장잠재력, 타산업과의 융합가능성·전후방연관효과와 녹색 성장 연관성 기준아래 미래기획위원회 등 폭넓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선정
 - * 고위급 범정부 신성장동력 TF(5회), 미래기획위원회 민간자문회의(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1회) 등 의견수렴
-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정부 차원의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09.1월)

□ 발굴 결과 :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 (녹색기술산업, 6개) 단순한 에너지 절감 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
- (첨단융합산업, 6개) 세계시장규모와 우리나라 기술 역량(IT분야)이 높고,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
- (고부가서비스산업, 5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기존 서비스업에 경제적 측면을 보강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2	'09
---	-----

- (종합추진계획) 17개 신성장동력별 「세부추진계획」(200개 정책과제)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확정·발표('09.5월, 「재정전략회의」)

- * R&D, 인력양성, 시범사업, 제도개선, 인프라 등 산업별 대책과 함께 기술전략지도, 인력양성계획,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기능별 대책도 제시
- 「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 개최를 통해 중장기 비전에 따른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09.5월)
- (스마트 프로젝트) 단기상용화 및 설비투자 유발효과가 큰 전략적 R&D를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를 통해 집중 지원 ('09.7월)
 - *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신성장동력분야 단기 R&D 프로젝트('09년 추경, 1,750억원)
-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R&D 및 설비투자를 유도하여 위기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
- (세제 지원) 민간의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R&D에 대해 과감히 세제지원('09.7월)
 - * 세액공제율(현행 → 개정): [일반기업] 3~6% → 20%, [중소기업] 25% → 30%
- (펀드) 민간 투자를 통한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운영
 - '신성장동력 첨단융합펀드'('09.8월), '바이오 메디컬 신성장동력펀드'('09.9월) 등 4개 펀드 출범
- (장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분야 핵심장비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방안」 마련 ('09.8월)

* 8대 핵심장비: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태양광, 바이오·의료, 산업용, 방송, 네트워크 장비

○ 수요자 연계형 R&D 지원*, 맞춤형 자금지원, 핵심인력 양성, 수출시장 개척 강화 및 개발장비에 대한 신뢰성·인증체계 구축 추진

* '신성장동력 장비 기술개발 사업'(10년 신규, 150억원)

□ (규제개혁) 총리실 주관으로 총 175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과제 확정('09.11월)

* 수소충전소 설치·안전기준 제정, 기존 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시설허가 면제 등

3	가
---	---

□ (민·관의 역할분담) 1여년간 민간주도의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확정('08.9월 '09.1월)하고, 민·관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토대로 추진계획을 수립

○ (정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수요·제도개선 등 초기시장 창출, 고위험 원천 기술개발 등 '민간부문의 투자환경 조성'에 역점

○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 신규 고용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

□ (후속 조치의 추진)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09.1월) 이후 종합추진계획·박람회(5월), 스마트 프로젝트(7월), 장비산

업 육성방안(8월) 등 추진

- (종합추진계획) 초기시장 단계인 신성장동력 분야 육성을 위해 원천기술 R&D부터 시장창출,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종합적 지원정책을 정상 추진중

(R&D) 고위험 핵심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

-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09년, 600억원), 그린카 원천기술개발('09년, 555억원) 등

(시장창출)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공공수요 활용, 시범사업 추진 등 재정 지원

- * 공공기관 조명 교체(LED), 발전차액지원 확대, 그린홈 100만호사업 등

(인프라·제도) 신성장동력 제품활용 촉진을 위한 표준·인증체계 마련 및 새로운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

- * 태양광·연료전지 등 21개 신재생에너지제품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 지열냉난방설비 누진제·할증제 폐지

(인력양성) 신성장동력 주요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 * LED 조명 맞춤형 SW인력양성(38개 과정, 1,683명),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09년, 97억원) 등

- (스마트 프로젝트) 대부분 대·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수혜가 크고, 대기업간 협력사업*도 포함되어 지나치게 경쟁적인 국내기업 문화가 상호협력·보완적으로 전환되는 계기

- * (현대차·삼성전자) 자동차, 전자산업 선두주자의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공동 개발,
(SK에너지·포스코) 청정석탄에너지 생산공정 협력개발(각각 前 공정, 後공정 개발) 등

□ (재원확보) '10년 지식경제부 전체 예산은 '09년과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성장동력에 대해서는 **16.5% 증액 반영**하는 등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

- * 지경부 전체 예산 : ('09) 14.6조원 → ('10) 15.0조원(2.7% 증가)
신성장동력 예산 : ('09) 1.41조원 → ('10) 1.65조원(16.5% 증가)

○ 예산확보와 함께 **R&D 기획 및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여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

□ (민간의 반응)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위축 분위기 속에서도 신성장산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 증가 추세

○ 주요 대기업의 바이오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출 등 단기 수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투자포트폴리오 구성**

- * (바이오) 삼성전자, 바이오 시밀러 진출(향후 5년간 5,000억원 투자 계획 발표, '09.7월), (태양광) 삼성정밀화학, 태양광사업 육성 전략 발표('09.6월), (청정석탄에너지) SK에너지, 무공해 석탄 가스화 기술 개발 추진 등('09.7월)

○ 다만, 아직 신성장 분야는 초기시장 형성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투자가 본격적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

□ (향후방향) '09년에는 신성장동력 육성의 기본틀을 완성하였으므로, '10년에는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모멘텀 강화 필요

- 주기적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과를 가시화하는데 주력할 필요

4	'10
---	-----

- (점검·관리) 신성장동력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정기적 「점검회의」(총리실, 연말 / 지경부, 반기)를 통해 정책과제* 이행상황 점검 및 신규과제 발굴 추진
 - *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09.5월)」상 200대 정책과제
 - 스마트 프로젝트 참여기업의 투자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스마트 프로젝트」 브랜드 관리 및 지속적 성과 유도
 - * 「스마트 프로젝트」 추진 성과에 대한 성과발표회 개최 추진 ('10.10월)
- (성과확산) '10년 중 이행상황 점검, 펀드조성 등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가시적 성과 구현에 주력

< '10년 신성장동력 주요 예상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LED 핵심장비 국산화율 : ('09)10% → ('10)20% ○ (방통융합) 지상파 DMB 장비 국산화율 : ('09)30% → ('10)45% ○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태양광 기술수준 : ('09)55% → ('10)70%
--

- (재정투입) 신성장동력 예산 확대('09년 1.41조원→'10년 1.65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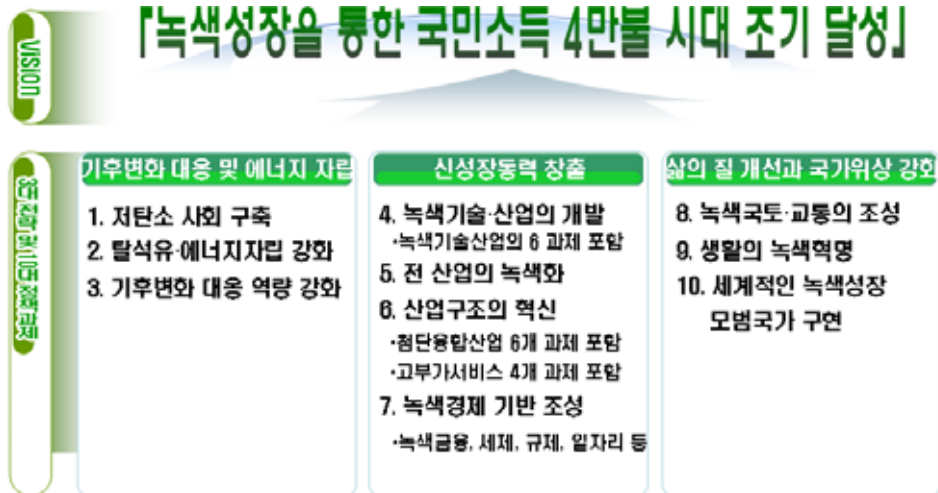
- (민간투자 유발)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과 신성장동력 펀드 추가 조성
 - 산업별 민간투자 실적·의향조사 등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투자애로요인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신성장동력 민간투자 점검회의, 6월)
 - *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10.1.27 위기관리대책회의)
 - 신성장동력 펀드 추가 조성(2,000억원), 「투자협력 지원단」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 * 신성장동력펀드 규모(억원) : ('09)6,500(정부 1,100) → ('10)8,500(정부 1,500)
- (장비·소재산업 육성)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전략」('09.8월)의 후속조치로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액션 프로그램 본격 추진
 - * 3~4년내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상되는 신성장동력장비 국산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10년도 시범사업 추진(150억원), 예비타당성 실시(현재 예타 중)후 확대 추진



-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이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환경이 성장동력으로 전환되어 경제와 환경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 신성장동력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기반한 시장성과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분야로서 녹색성장을 위한 가장 적극적 실천 전략

- 신성장동력 창출은 녹색성장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3대전략의 중심축을 담당

<녹색성장 비전과 전략>



재정법 워크샵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 (IT분야)

2010.03.30

권헌영
(광운대)

차 례

1. IT 분야 신 성장동력 산업
2. IT 산업분야의 재정법적 현안
3. 재정관련법제 개선전략

1. IT 분야 신 성장동력 산업

- 신 성장동력의 개요

- 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으로 신 성장동력비전과 발전 전략 발표 (2009년 1월, 3대 분야- 17개 신 성장동력)
- 신 성장동력을 토대로 향후 10여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 담보 목표
- 현 정부의 당면과제인 녹색성장에 대응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식 중심 사회 창출의 기반이 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를 대폭 반영

1. IT 분야 신 성장동력 산업

- 신 성장동력의 개요

- 3대 분야, 17개 성장동력 내역

3대 분야	17개 성장 동력
녹색기술산업(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첨단융합산업(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MICE :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vents(국제행사)

1. IT 분야 신 성장동력 산업

- 신 성장동력과 IT분야

-17개 신 성장동력 중 IT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

녹색기술산업 분야

- 첨단그린도시 (ex: U-city)

첨단융합산업 분야

- 방송통신융합산업 (ex: IPTV, 차세대 무선통신 등)
- IT 융합시스템 (지능형 자동차, Flexible DP 등)

고 부가서비스산업 분야

- 콘텐츠, 소프트웨어 (ex: 게임 콘텐츠 등)

1. IT 분야 신 성장동력 산업

- **현 IT 분야 신 성장동력의 선정의미**
 - 대내외 급속한 환경변화 및 경제구조 변화 :
탈공업화, IT 관련 지식산업의 폭발적 성장
 - 사회 특성: 고령화, 여성권익신장, 가족중심의 이기적 웰빙 문화
 -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인터넷 문화의 정착
웹 2.0과 UCC 열풍, 참여-공유-개방의 문화 확산(디지털 프로슈머 등장)
 - ICT의 폭발적 성장 :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
사람과 사물 모두가 망으로 연결되는 미래사회 근접
발전된 기술과 소비자 욕구 다양화로 디지털 융합서비스 확산

1. IT 분야 신 성장동력 산업

- IT 신성장동력 산업 진흥의 당면과제
 - 핵심 Key word: **분산화, 전문화, 융합화**
 - IT정책의 수평적 수준제고 → 수직적 보편화 추구
 - 모든 부처가 소관분야 IT 정책을 책임 추진
 - 기존 정책과 산업분야에 IT를 활용한 고도화가 정책목표
 - 기반구축/기기산업 중심 발전 전략 →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중심의 새로운 IT산업
 - 신성장동력 분야를 주축으로 한 산업 진흥 목표 설정을 중심으로,
 - 설비투자 및 인프라 구축이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

⇒ **명확한 법 제도적 근거를 가진 효율적,
안정적 재정투입이 필수적으로 요구**

2. IT 산업분야 재정법적 현안

- IT 산업정책과 재정

- 뛰어난 정책전략이 존재한다고 해도 신 성장동력과 IT산업의 발전의 관건은 결국 안정적 재정투입 관련사항으로 귀결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근거가 명확하고 상세하여야 하며,
- 재정정책이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함
- 투입되는 재정의 세입과 세출은 정책운영의 근간

2. IT 산업분야 재정법적 현안

-IT 산업정책에 있어서 세입

-정보통신진흥기금

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 (현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근거, 구 정보통신부가 조성 및 운영
“정부출연료·용자금”, “기간통신사업자 및 기타 사업자의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사용료” 등
이 중요 재원으로 조성
조직개편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기금 관련 업무이원화; 제도화 추이에 따라 변경



- 기금조성과 집행간 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필요에 따라 부처간 경쟁 불가피
- 재정법적 관점에서 기금의 존치여부 및 조성과 집행부처의 리더십 일원화 여부 결정 필요

2. IT 산업분야 재정법적 현안

- IT 산업정책에 있어서 세입

-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일반예산과의 관계

특정 목적 위해, 특정 자금을 신속적 운용 필요시 조성,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 가능

일반 예산과 달리 IT 분야의 육성 및 지원에 국한하여 정책목적 맞게 활용 필요



일반예산의 경우 부처별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결정되는데 반해, 이 외에 기금을 활용하여 IT 산업관련 증진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및 행정안전부 등의 역할조정 필요

2. IT 산업분야 재정법적 현안

- IT 산업정책에 있어서 세입

- IT 예산의 중복가능성: 부처별 소관업무 분리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화 총괄 업무 수행 및 정보보호 등 주 업무 담당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기반 고도화, 이용자보호 및 안정성 확보, 전기통신 및 인터넷 관련

지식경제부

- 정보통신산업 기반조성, 자금융용, 이용촉진, 정보통신공사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문화체육관광부

- 디지털콘텐츠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 업무분리로 인한 집중과 분리 수행의 어려움, IT 산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거시적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조율역할 필요

2. IT 산업분야 재정법적 현안

- IT 산업분야 재정정책의 방향 정립

- 예산 컨트롤타워 기능과 정보화 IT산업정책의 연계

일반적인 예산확보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산안 편성 후 각 중앙행정관서로 배분

- 기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부터 재정운용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의 편성 및 배분의 총괄업무 수행.

- IT관련분야의 정책은 청와대 IT특보 또는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통해서 수립·시행되는 바, 이원화된 정책수립체계와 방통위의 조직적 한계(합의제) 예산과 예산집행의 기반이 되는 정책의 일관성을 갖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 발생



예산과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추진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기획이 개별 정책작용 법에 따른 정책계획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

2. IT 산업분야 재정법적 현안

- IT 산업분야 재정정책의 방향정립

- 설비투자중심에서 **Softpower(인력·콘텐츠)의 장기전략마련으로 전환:**

기존의 우리사회의 IT산업 육성 및 진흥은 기반 조성 및 폭넓게 조성된 기반의 고도화에 집중

- 또한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차원의 정책적 선도에 의한 것이어서 짧은 시간에도 높은 성장이 가능

- 그러나 기반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국가주도로 구축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국가 예산의 확보와 집행을 수반하므로 산업의 육성이라는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확충은 국가재정의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

2. IT 산업분야 재정법적 현안

- IT 산업분야 재정정책의 방향정립
 - 설비투자중심에서 **Softpower(인력·콘텐츠)의 장기전략마련으로 전환**
 - IT산업의 재정정책의 변화 필요성
기존 인프라 산업육성 및 진흥 → 신 성장동력 중심 민간산업의 활성화
 - 전체 IT산업의 발전 방향과의 연계 필요성
전문인력의 양성, 고도화된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민간의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 개발은 자연스레 경제와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는 새로운 재정책확보의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2. IT 산업분야 재정법적 현안

- IT 산업분야 재정정책의 방향정립
 - 시장과 재정역할 분담방안 마련
 - 신 성장동력 관련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점검하는 일은 정부의 주된 역할
 -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와 전략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최신화 할 필요
 - 정부에 요구되는 것은 민간의 투자와 재정참여를 리드할 수 있는 스마트한 리더십

3. 재정 관련법제 개선전략

- 재정관련법제의 개선전략

- 예산 관련 재정법제와 정책 관련 작용법제의 연계 개혁 및 내실화

재정법제

-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예산-세입관련법 등

개별작용법제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망법 등 산업관련 정책법제

- 개혁은 관련 원칙에 입각하되, 관련 산업발전이 추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원화 하여 산업발전의 원동력 제공

3. 재정 관련법제 개선전략

- **재정관련법제의 개선전략**

- 재정법상의 주요 원칙과 개별법 작용법상 기금의 원칙(근거 및 활용)을 염두에 두되,
- IT 산업발전과 신성장동력의 효과적 성장이 최우선 목표임을 명확히 하려면 혼재되어 있는 법제의 정비와 우선될 필요
- 범부처 수준의 위원회 내지는 대통령 직속수준의 Control tower를 중심으로 개선을 위한 고민 필요: 녹색성장과 신 성장동력이 현 정부의 당면과제임을 인지한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뒷바침할 재정 근거 정비는 시급한 사항
- IT 분야 신 성장동력 육성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과 리더십 집중이 요구

감사합니다.

토 론 문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IT분야)」

김도승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원, 법학박사)

I. 신성장동력과 IT산업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20여 년 동안 정보통신 분야는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 분야로 인정받아, 국가적으로 집중적인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투입이 이어졌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글로벌 IT 강국으로 도약하였고, 이는 민간 산업부분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를 위시한 IT를 활용한 정부혁신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간 IT산업육성 및 국가·사회 정보화를 이끌던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관련기능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이관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부처의 통폐합 문제가 아닌 다양한 IT정책을 망라해온 “국가 IT컨트롤 타워”의 부재라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의 일대 사건으로 회자된다. 이러한 국가 IT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폐해는 분산된 IT 관련 부처의 영역 다툼과 예산 반영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2009년도 추경에서의 대폭적인 관련 예산 삭감(IT관련 부처 요구액의 3분의 1 수준만 반영), IT관련 정책의 중복·반복 심화 등을 거론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합된 정부정책 추진을 위해 각 부처별 그린IT 관련정책을 통합한 「그린 IT 국가전략(2009)」을 발표하여 IT 관련 정책 기획 및 조정기능의 강화를 모색하였다. 아울러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도 「IT Korea 5대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IT 콘텐츠를 타워를 중심으로 IT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IT융합, S/W,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 추진을 목표로 하고 향후 5년간(2009~2013) 정부와 민간이 189.3조원 규모의 투자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IT산업이 진정 향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미리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미래의 투자방향에 대한 적절한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II. IT산업 육성책과 국가재정수입 : 현행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문제점

발표문에서는 신성장동력으로서 IT산업의 의의 및 중요성, IT산업진흥을 위한 당면과제 등을 논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 특히, 기반구축/기기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에서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중심으로 정책기조가 발전하여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또한 민간의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의 개발이 경제와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재정확보의 수단으로서 피드백될 것이라는 논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선제적인 산업지원정책 및 관련 법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정보화관련 예산 및 재원조달 체계는 일반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3원화되어 있다. 그런데 IT의 활용분야가 넓어지고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부처가 IT 관련 업무를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소관업무의 중복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처럼 정보화의 성숙에 따라 각 부처가 자체적인 정보화능력을 보유하고 개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정보화관련 위원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차원의 기획 및 조정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문에서는 IT산업의 재정법적 현안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¹⁾의 조성 및 집행에 있어서 정책적 혼선 내지 권한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현 정부조직에 있어 기금 조성 및 규제, 산업의 진흥이라는 역할이 분할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왜곡과 부처간의 알력다툼으로 인한 부작용(특히, 책임소재의 불명확)을 해소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가 분명하다.²⁾

특히, 이러한 혼선은 산업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R&D 분야에서 그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출범 초기 방송법 논란, KBS 및 YTN 인사문제 등 정치적인 이슈에 함몰되면서 IT분야 R&D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점차 조직이 안정되면서 최근 미래인터넷, 모바일서비스, 융합기술, 정보보호, 차세대방송, 전파·위성 분야 등 총 6개 분야에 본격적으로 R&D 과제 도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갈등은 곧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대변되는 IT분야 R&D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금 활용이나 중복된 영역에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왜곡현상을 해소할 조정체로 과거 정보화추진위원회(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³⁾)가 주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연간 2~3회 운영, 그마저도 주로 서면회의)되고,

-
- 1)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법(구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 주요 조성재원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연도별 출연금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사업, 정보통신관련인력의 양성사업,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 2)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지경부가 관장한다는 것에 대해 반발, 출범 이후 지경부와 기금 운용권을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

각종 정보화사업의 실질적인 예산조정, 정보화 평가를 통한 환류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정보화사업간 중복·유사성, 상호연계성 등을 지적하더라도, 기획재정부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는 별개의 프로세스로 사업을 심의하는 등 기획과 예산이 분절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IT분야가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성, 다 부처 관련성, 공통인프라 및 표준 활용 필요성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는 IT관련 조직과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다(예산의 분배에 있어 IT산업 육성을 위한 범국가적 정책기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께서는 IT산업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시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조율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를 위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조정체계를 활용·내실화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고견을 듣고 싶다(특히, 재정정책과 IT산업정책의 유기적인 접목이라는 관점에서).

아울러 기금의 주 재원은 통신사업자의 연도별 출연금인데,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선사업자인 KT 등의 출연금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할 계획을 밝힌 바 있고, SKT도 동일한 취지의 감면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한 결정은 기금의 설치목적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조성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높은지, 다른 재원을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산 또는 다른 기금과의 통합은 필요하지 않은지, 기금사업이 예산 또는 다른 기금사업과 차별성이 있는지, 기금간 사업 및 역할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 이처럼 최근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재정정책에서 기금조성이 갖는 의의와 한계 측면에서).

Ⅲ. IT산업 육성책과 국가재정지출 : 공공 IT구매제도 (행정계약법제) 개선

본 발표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공공부문에 있어 소프트웨어, IT서비스 등 IT구매프로세스와 관련한 쟁점도 조달행정 분야로서 재정법 논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IT구매에 있어 공공부문이 갖는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공공부문에서 IT산업 육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갖추고 시장을 환기하는 일은 산업발전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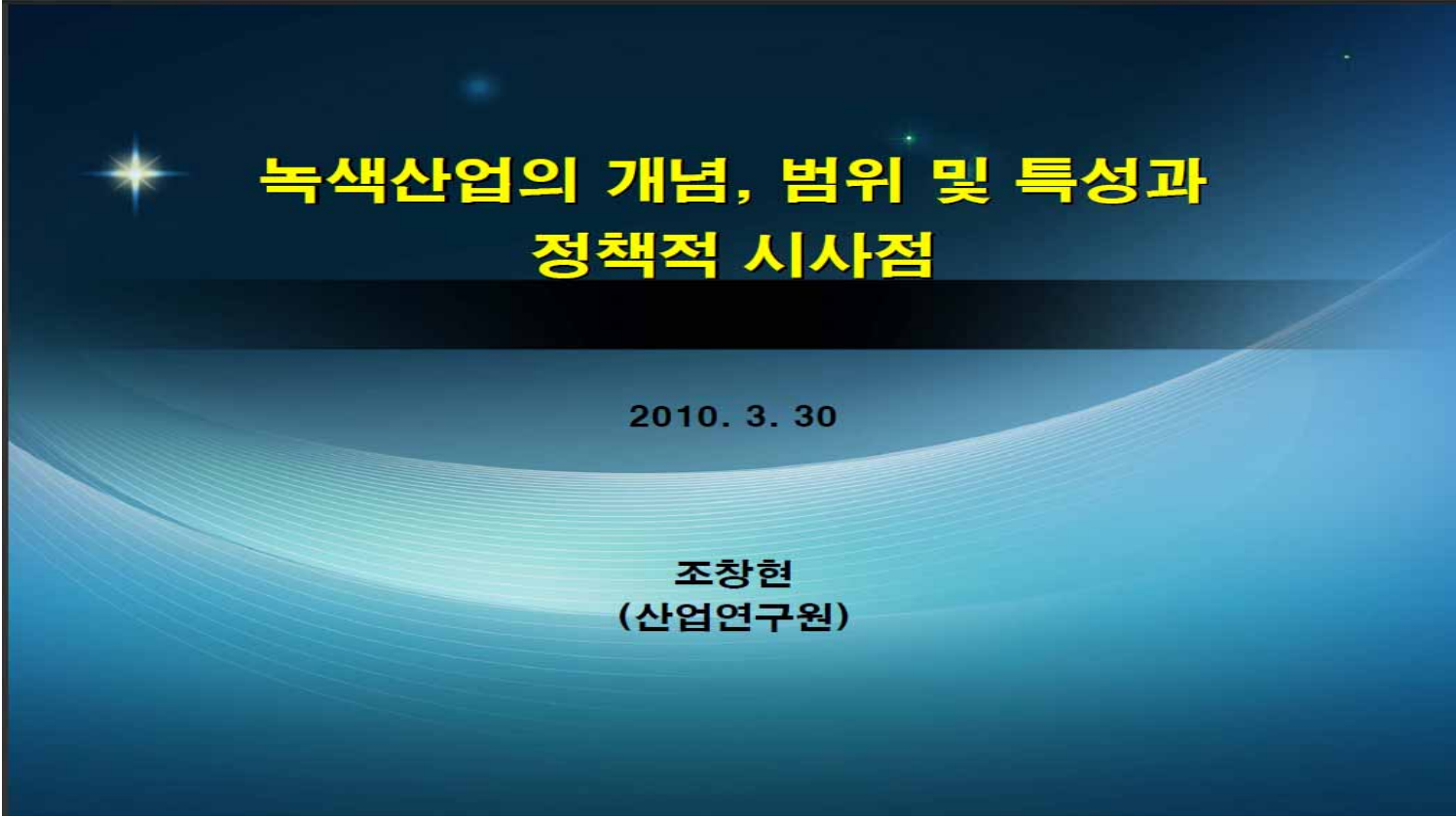
그간 추진해온 소프트웨어 분리발주⁴⁾나 일정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입찰참여 제한 등의 정책이 그 일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가수주로 인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산업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IT구매계약의 평가기준에 있어 기술성을 강화하고 평가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계약에 있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대가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불명확하거나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는 것 또한 소홀할 수 없다(국가계약법제의 개선).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것처럼 IT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서 품질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를 기본골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바, 이처럼 재정효율과 산업지원·육성이 갈등하는 범영역을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조정할 것인지가 근본적인 과제이다.

4) 사업규모가 10억원이상 정보화사업 중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제도이다. 소프트웨어 '제값받기'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으로 일부규모 SW분리발주가 의무화되었다('09.3.5). 그러나 일괄발주와 비교할 때 하자보수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고, 발주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전체 계약대비 그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예컨대, SW개발,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IT구매는 그 계약목적이 갖는 특수성, 발주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됨에도 전문적인 사업관리 조직이 부족한 문제 등으로 사업수행 중에 과업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실패율이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 높은 특성을 지닌다. 그런데 이 같은 과업변경이나 실패율을 엄격한 계약법 내지 예산기준의 잣대로만 판단하다보면 하자가 결국 은폐되거나 사업자의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⁵⁾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사업자의 추가부담은 IT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고, 특히 중소 IT업체의 부담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IT구매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계약 및 예산제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IT산업육성을 위해 재정법 분야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5) IT구매사업의 특성과 계약법적 문제에 관하여는 줄고,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계약제도 개선방안”, 정보통신정책 제18권20호 참조.



녹색산업의 개념, 범위 및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2010. 3. 30

조창현
(산업연구원)

발표 순서

- 녹색산업이 주목을 받게 된 배경
- 녹색산업의 정의, 범위 및 특성
- 녹색산업의 현황
- 녹색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 정책적 시사점

녹색산업이 주목을 받게 된 배경

❏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성장의 한계와 부작용

-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
-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
- 에너지(석유)가격 등락에 취약하고 에너지효율이 낮은 산업구조
- 석유 고갈 가능성

※ 화석연료는 오래전 서식했던 유기체의 잔존물로 인해 생성된 에너지 자원: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녹색산업이 주목을 받게 된 배경

- **기후변화협약 관련 온실가스 감축 부담**
 -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은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 흐름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사전 대비
-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의 필요성과 성장패러다임의 변화**
 - 녹색성장을 통해 에너지 위기 및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달성
 - 전세계가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2008년에 천명
 - 녹색산업은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산업적 토대와 핵심 경로

녹색산업의 정의와 산업적 범위

1. 국제기관 및 외국의 경우

Kaye(2007)/OECD(1999)의 정의

- Kaye(2007)는 OECD(1999)가 시도한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 또는 ‘환경재화·서비스산업’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industry)에 대한 정의를 녹색산업의 정의로 수용
- OECD(1999)는 환경산업을 오염관리군, 청정기술군, 자원관리군 등 세종류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환경산업을 정의
 - “환경산업은 물, 공기, 토양에 대한 환경적 피해 및 폐기물, 소음, 생태시스템 등과 관련한 문제를 측정, 방지, 제한, 최소화 또는 시정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
 - <표 1-1> 참조

녹색산업의 정의와 산업적 범위

UN 환경프로그램의 정의

- “녹색경제분야” (green economy sectors)를 제시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범위에서가 아니라, 고용과 GDP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탄소의존도를 줄이거나 또는 생태에 공헌하는 녹색경제분야라는 제한적인 범위의 분야만 제시
- 에너지 효율 빌딩, 지속가능한 수송, 지속가능한 에너지, 청정수, 생태 인프라, 지속가능한 농업, 기타 녹색경제분야 등

녹색산업의 정의와 산업적 범위

EBI의 정의

- 미국에서 대체로 통용되어 온 환경산업 분류는 환경전문 컨설팅업체인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사에 의한 것
 - 환경서비스(environmental services), 환경설비(environmental equipment), 환경자원(enviromental resources) 등 세가지 분야로 구분
 - 환경산업에 태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력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EBI사가 설정한 환경산업의 범위는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
 - <표 1-2> 참조

녹색산업의 정의와 산업적 범위

캘리포니아주의 정의

- “녹색산업”이라는 용어와 개념에 근접하는 용어와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의 설정을 최근 시도한 경우는 미국과 영국
 -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부(California Employment and Development Department)(2009)는 ‘녹색경제’ (green or clean economy) 분야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기존자원의 재활용, 에너지효율 제품 제조, 유통, 건설,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교육,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 자연제품 및 지속가능한 제품 제조 등 5개 분야로 설정
 - <표 1-3> 참조

녹색산업의 정의와 산업적 범위

워싱턴주의 정의

- 워싱턴주 지역사회, 무역 및 경제개발부(Community, Trade & Economic Development)(2009)는 녹색경제(green economy)가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개발과 사용, 에너지 자립 및 경제개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면서, 녹색경제를 ‘환경보호 또는 에너지확보를 촉진하는 신제품, 신기술 신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기존의 경제를 녹색화하는 것’ 으로 정의
 - 청정에너지(clean energy)를 녹색경제의 가장 큰 요소로 보며, 청정에너지의 주요분야를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 에너지의 3개분야로 제시
 - 녹색경제 산업분야(green-economy industries)의 범위를 청정에너지, 녹색빌딩, 녹색수송, 환경보호 등 4개분야로 설정하고 각각의 분야는 4단계의 공급사슬(supply chain)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
 - <표 1-4> 참조

녹색산업의 정의와 산업적 범위

영국정부의 정의

- 영국의 경우 “녹색산업” 이라는 용어와 개념에 가장 근접하는 공공차원의 용어와 개념은 ‘저탄소 및 환경재화·서비스 부문’ (LCEGS: Low Carbon and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sector)
- 영국 기업·규제개혁부(BERR: 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는 저탄소 및 환경재화·서비스 부문을 전통적인 환경산업의 확장된 개념으로 설정하고, 이를 세가지 산업부문으로 분류
 - 환경부문: 대체로 전통적인 환경산업분야와 일치하는 분야
 - 신재생에너지부문: 예전에는 환경분야의 일부 또는 에너지분야의 일부로 분류되었던 분야
 - 신저탄소부문(emerging low carbon sector)
 - <표 1-5> 참조

녹색산업의 정의와 산업적 범위

2.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2009)

- '경제, 금융, 건설, 교통물류, 농림수산, 관광 등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 으로 정의
- 산업연구원(2008)은 정부의 녹색산업의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이를 크게 신재생에너지 전환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제조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산업 및 기후변화파생산업, 환경산업 등 3분야로 분류
 - <표 1-6> 참조

녹색산업의 정의와 산업적 범위

필자의 정의

좁은 의미의 녹색산업

- 저탄소 청정에너지, 자원의 생산, 에너지, 자원의 이용효율성 제고, 온실가스의 저감, 환경오염의 저감, 또는 자원순환 등이 당해 산업의 주된 활동 또는 의미 있는 활동인 산업으로, 동 활동에 따른 매출 또는 부가가치가 당해 산업 전체의 총매출 또는 총부가가치의 의미 있는 비율을 구성하면서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산업

넓은 의미의 녹색산업

- 저탄소 청정에너지, 자원의 생산, 에너지, 자원의 이용효율성 제고, 온실가스의 저감, 환경오염의 저감, 또는 자원순환 등이 당해 산업의 활동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산업, 또는 당해 산업의 활동을 통해 저탄소 청정에너지, 자원의 생산, 에너지, 자원의 이용효율성 제고, 온실가스의 저감, 환경오염의 저감, 또는 자원순환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산업

녹색산업의 특성

- ❑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의한 국내 경제성장과 국내 환경·에너지문제 및 국제사회에 기여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산업이며, 기업의 관점에서는 고성장과 수익창출 및 고객 삶의 질 향상에의 기여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산업
- ❑ 녹색산업 발전 및 녹색기술 개발은 기존 산업의 생산방법 전환 또는 기존 산업의 대체 등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녹색산업은 이와 같은 전환 또는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
- ❑ 사회에서 요구하는 복리와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 기술의 사업화 또는 상업화에 장애가 적고, 해당 사업의 이익극대화가 바로 사회적이익의 극대화로 연결되는 산업
- ❑ 시장의 실패 및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과정과 긴밀히 연관된 산업

녹색산업의 특성

- ❑ 시장의 실패 및 외부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바로 그 점에서 녹색산업이 규제에 의해 발전될 수 있는 산업이라는 특성이 파생
- ❑ 규제에 못지 않게, 정부의 인센티브 또는 지원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산업
- ❑ 기업의 사적인 내부정보를 사회적 정보로 또는 공공 정보로 변화시킴으로써 숨겨진 국가적 비용을 드러난 사회적인 비용으로 전환되도록 하는데 유용한 산업
- ❑ 상당부분 미개척분야 또는 개척초기분야이며, 녹색산업 관련 기술은 상당부분 미개척영역에 속한 프런티어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산업적 또는 기술적 발전 잠재력이 크다

녹색산업의 특성

- ❑ 녹색산업의 미래 기술적 특성은 “복수의 핵심기술의 포트폴리오화” 또는 “핵심기술의 이종복합화”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
- ❑ 기존 산업의 녹색화가 진전됨에 따라 녹색산업이 기존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커짐
- ❑ 기술수명주기 및 제품수명주기는 기존산업의 그것보다 대체로 짧음
- ❑ 녹색기술간에는 전통적 산업들의 경우에 비해 대체로 상호간 연계성 또는 단계적 연계성이 적고, 단속성이 높음

녹색산업의 현황

신재생에너지산업

- 보급률이 총에너지공급 대비 1.4%에 불과
- 3대 신재생에너지산업이라 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은 시장화 초기단계
- 태양광, 풍력 등 주력분야는 정부의 보급사업 및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에 크게 의존
- 소재 및 부품 수입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태양광의 경우 원료는 40 - 50%, 모듈 및 시스템은 20-25%를 수입에 의존하며, 풍력의 경우 주요 핵심부품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
- 풍력의 경우 블레이드, 플랜지, 회전축, 타워 등 일부 부품이 개발되고 있지만 성능면에서 선진국보다 미흡하여 국내에서도 선진국 제품이 선호되는 추세이며, 관련 핵심 소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 기술수준도 1세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이나, 2세대 박막 태양전지는 선진국의 80% 수준

녹색산업의 현황

에너지효율산업

- 현황 파악이 잘 안되는 분야, 전동기, 조명기기 등이 주 품목
- 전동기(60%)와 조명기기(20%)가 국내 전력소비의 80%을 차지하여 이들의 고효율화가 절실
- 기술인력 부족, 자금 부족, 시험기관 부족 및 시험장비 고가 등이 애로점
-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절약 조명수단인 LED 조명의 경우 국내 시장규모는 2008년 2,063억원으로 추정되며, 2015년에는 시장규모가 3조 7,867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됨
- 미국, 일본, 독일의 경쟁력이 높아 이들 3개국에 세계시장의 2/3를 점유
- 우리나라 LED 조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60-70% 수준, 차량조명 분야에서 선진국의 60% 수준, 일반조명 분야에서 선진국의 70% 수준

녹색산업의 현황

■ 환경산업

- 매출액은 2003년 부터 연평균 15.8%씩 고성장하여, 2007년 현재 34조 1117억원
- 수출액은 2003년 부터 연평균 32.6%씩 고성장하여, 2007년 현재 1조 7075억원이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고 수출의 90% 이상이 개도국에 집중
- 자원관리관련 유통업(25.7%), 오염관리관련 서비스업(21.8%), 자원관리관련 생산업(20.2%) 등이 대종을 이룸
-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연간 10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평균 고용인원도 10인 이하가 전체의 2/3을 점할 정도로 규모가 영세
-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평균 62%에 불과

녹색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정부의 주요 녹색산업 육성전략

- 녹색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의 세가지 측면
 - 주로 '전략'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정부의 육성방안 또는 지원방안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녹색성장의 법적 기초와 근간
 - 녹색산업에 속한 개별산업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지원제도
- 정부의 주요 녹색성장 전략: <표 1-7> 참조
 -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 녹색뉴딜사업
 - 그린IT전략
 - 녹색기술 연구개발전략

녹색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의 주요내용

주요내용의 구성

-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촉진
-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 기후변화,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
- 녹색국토 조성
-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녹색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의 주요내용

☞ 지원제도(인센티브)

- 녹색성장, 녹색경영 및 녹색기술 지원(20~26조)
 - 재정, 금융, 세제, 교육훈련, 인력, 기술, 연구개발 지원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 또는 보조금 지원(26조)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감면(26조)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대해 표준화 및 국제활동 지원, 부담금 감면 및 기술지도(29조)
- 대기업-중소기업간 공동사업 지원(30조) 및 중소기업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사용 지원(31조)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집적지 및 산업단지 조성 지원(32조)
- 녹색일자리 창출 활동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33조)

녹색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의 주요내용

☞ 지원제도(인센티브)

-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실태조사, 준비, 기준, 정보 수집 등에 대한 지원(35조)
-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목표관리 관련 경영지원, 기술적 조언, 실태조사 및 진단 지원(40조)
- 저탄소 고효율 친환경 수송수단의 제작 및 보급 지원(44조)
- 녹색건물 확대를 위한 특례인정, 자금지원, 조세감면(44조)
- 물산업 육성 지원(49조)
- 정부가 출자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59조)

녹색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의 주요내용

규제

- 에너지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및 위법에 의한 이익 환수(37조)
-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정부에 보고, 공개하고 관련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해야 함(40조, 41조)
-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세부규정을 다른 법률로 제정(43조)
- 자동차, 해운, 항공 등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등을 제정하여 규제(44조)
- 건물등급제,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 강화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51조)
- 재화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및 등급 표시, 공개를 위한 규제(54조)

녹색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 보급지원제도

- 보조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유도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2009~2020)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바이오(목재펠릿보일러)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주택을 대상으로 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
- 지방보급사업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
- 용자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자금지원
- 기술개발사업
 - 프로젝트사업, 정책연구사업, 성능평가사업, 실증연구사업 등

녹색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기반조성사업

발전차액지원제도

- 신재생에너지의 투자경제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이 고시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을 장려
- 지원대상은 태양광, 풍력, 수력, 폐기물, 바이오에너지, 해양에너지(조력), 연료전지 등

전문기업제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육성하여 설비의 신뢰도를 제고
- 일정 기준 이상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선정

설치의무화사업

- 공공기관 발주의 연건축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인증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성능평가 및 기술의 규격화/표준화를 통해 설비의 실용화 촉진

녹색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에너지효율산업 지원제도

- 소비측면의 에너지효율 지원 제도
 - 효율관리제도
 -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보급확대를 목표
 -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 자발적 신청에 의거, 건물에 에너지 등급을 부여
 - 수송에너지 절약제도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친환경적 자동차 구매 유도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 대규모 에너지사용 시설이나 사업에 대해 에관공과 에너지사용계획을 사전협의

녹색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에너지효율산업 지원제도

- 생산측면의 에너지효율 지원 제도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제도
 - 기존 에너지사용시설의 개체, 보완시 전문기업을 통해 투자함으로써 사용자의 비용을 절감해주는 동시에 전문기업을 육성
 - 자발적협약(VA) 제도
 - 에너지를 생산, 공급, 소비하는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소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 이행하며, 정부는 이를 모니터링하고 세제 등을 지원하여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
 - 집단에너지 보급/소형열병합발전사업 관리제도
 - 에너지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소형열병합발전 사업자에 대해 자금, 세제상의 혜택 등을 지원

녹색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환경산업 지원제도

■ 환경기술개발 지원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환경과학기술 10개년 계획: 1992~2001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001~2010

■ 친환경상품 보급 지원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05
- 환경라벨링제도: 친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명기함으로써 소비자 및 생산자의 친환경상품 선택과 생산을 유도

■ 환경친화기업 지정 제도

- 기업 스스로 사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환경목표를 설정, 이행하는 제도로 정부와 기업간 신뢰를 기반
- 지정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 등 지원

시사점 (재정법제적 이슈 관련)

- ❑ 정책의 초점은 세가지: 녹색성장의 산업적 토대인 녹색산업 자체의 발전. 주력전통산업의 녹색화. 산업전반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화 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
- ❑ 시장주의가 아닌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 시장실패/외부성의 내부화과정
- ❑ 녹색산업 발전의 최대현안은 낙후된 기술수준 제고와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제고 및 동기부여시스템으로서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 정비
- ❑ 녹색기술 개발과 정부의 초기시장 창출 및 관련 인프라 정비에 의한 녹색산업의 발전기반 구축이 긴급
- ❑ 당근과 채찍의 병행

시사점 (재정법제적 이슈 관련)

- ❏ 녹색기술이 주력전통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트렌드에 주목: 리튬이온전지(자동차), LED(TV)
- ❏ 녹색기술의 융복합화 지향: IT, BT, NT 등 신기술 + 주력전통산업기술 + 녹색기술
- ❏ 우리나라만의 선택과 집중: 경쟁국과 경쟁기업을 감안한 “전략적” 마인드
- ❏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원제도 정비: RPS 제도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상호보완적 활용
- ❏ 근접기술과 차세대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유연한” 기술개발전략이 필요: 첨단녹색기술의 변화방향 예측 곤란

시사점 (재정법제적 이슈 관련)

- 녹색성장기본법안의 구체성과 [일부 사안의 경우] 추진력 확보 필요
 - 미국 기후변화법안(Waxman-Markey법안)의 경우 구체성, 강제성 등이 뒷받침되어 정책추진력 확보
- 온실가스 연계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선진국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cap & trade) 보완 목적의 각종 제도(리베이트 프로그램, 수입연계 배출권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표 I-1> OECD의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 분류

분류	세분류
오염관리군	대기오염 관리, 폐수 관리, 고형폐기물 관리, 토양, 지표수 및 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소음 및 진동 감소, 환경 모니터링과 분석 및 평가
청정기술군	청정/자원효율적 기술 및 공정, 청정/자원효율적 제품
자원관리군	실내공기오염 관리, 물 공급, 자원 재활용, 재생에너지 공장, 열/에너지 절약 및 관리, 지속가능 농업 및 어업, 지속가능 임업, 자연재해 관리, 생태관광, 기타(자연보존, 생태다양성 등)

<표 I-2> EBI사의 분류에 의한 환경산업의 범위

구분	세부분야	비고
환경서비스	환경시험 및 분석 서비스	(토양, 물, 공기, 생물조직 등) 시료채취 및 분석
	폐수처리 서비스	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고형 폐기물 관리	고형폐기물의 수집, 중간처리 및 처분
	유해 폐기물 관리	유해 폐기물, 의료 폐기물, 핵폐기물 취급 관리
	복원/산업 서비스	공장, 오염된 토양 및 건물의 물리화학적 복구·정화
	컨설팅/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컨설팅, 디자인, 평가, 허가, 프로젝트 관리, O&M, 모니터링 등
환경설비	수처리장치 및 약품	원수 및 폐수처리 관련설비의 제조, 공급, 유지보수
	계측기기 및 장비시스템	환경시료 분석을 위한 계측기기 생산
	대기오염 제어설비	대기오염제어 설비 및 기술생산
	폐기물 관리시설	고체, 액체, 유해폐기물의 처분, 저장, 운송 시설, 재활용 및 폐기물 관련 환경복구 장비
	공정 및 사전예방기술	사후처리보다는 공정과정에서의 오염예방 및 처리를 위한 설비 및 기술
환경자원	상하수도 공익설비	최종수요자에게 수자원 배분
	자원재생 및 재활용	산업활동의 부산물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재생 및 변환된 물질의 판매
	청정에너지 및 전력	태양, 풍력, 지열 등에 의한 재생에너지와 시스템 판매, 에너지 효율 제고

<표 I-3> 캘리포니아주가 설정한 녹색경제 분야

분류	구체적 분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풍력, 태양광 및 태양열, 수력,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지열 등에 의해 생산되는 대체에너지 분야
기존자원의 재활용	재활용가능제품의 수집 및 처리 분야, 재활용공장 및 폐수 처리공장, 환경 청정화 및 개선
에너지효율 제품 제조, 유통, 건설, 설치 및 유지보수	태양광 패널, 에너지효율 전구, 에너지효율 차량 등의 제조, 연구 및 개발. 신규 또는 기존 주택 및 상업용 건물에 이들 제품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업종분야 및 관련 부동산 기획과 개발
관련 교육,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	태양광 패널 설치, 에너지 감사, 지속가능경영, 환경분야 등에 대한 교육훈련, 환경분야 컨설팅, 관련 정부정책 및 법규 상담서비스, 환경보호 및 야생보호 프로그램, 관련제품 거래 및 결제, 관련 사회보조 프로그램 등
자연제품 및 지속가능한 제품 제조	자연재료를 사용한 제품, 무독성 제품, 대나무제품, 재활용 제품, 유기농작물 재배 농장 등

<표 I-4> 워싱턴주가 설정한 녹색경제 산업분야

구분	분야
산업분야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 녹색빌딩 ○ 녹색수송 ○ 환경보호: 폐기물 관리, 수자원 보호
공급사슬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류(upstream): 연구, 개발, 상업화 ○ 생산: 유용한 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 생산 ○ 인프라: 배송시스템(전력망, 철도, 송전선 등) ○ 소비: 최종소비자를 위해 소비의 효율과 접근성 등을 증진시키는 기술과 제품

<표 I-5> 영국 정부가 설정한 저탄소 및 환경재화·서비스 부문

분류	구체적 분야
환경부문	대기오염관리, 환경 관련 컨설팅, 환경 모니터링, 해양오염 관리, 소음 및 진동 관리, 오염토양 회복관리, 폐기물 관리, 수자원 공급 및 폐수처리, 자원 재생 및 재활용
신재생에너지부문	수력, 파력 및 조력,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 컨설팅
신저탄소부문	대체연료, 차량용 대체연료, 추가적 에너지자원, 탄소 포집 및 저장, 탄소금융, 에너지 관리, 빌딩기술

<표 I-6> 산업연구원(2008)이 설정한 녹색산업 분야

구분	세부업종
신재생에너지전환업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제조업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 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및 중질잔사유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에너지이용효율화산업 및 기후변화파생산업	고효율 전동기·히트펌프·조명기기(LED 등)와 같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의 제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등 관련 컨설팅 혹은 엔지니어링업, 송배전효율화시스템 제공업, 수력지능형 교통시스템 제공업, 탄소 배출권 획득 관련 산업, 이산화탄소 포집산업 등
환경산업 (오염관리 관련산업, 청정기술·제품관련산업, 자원관리 관련산업)	대기오염제어 기기 생산업, 폐수관리 기기 및 제품 생산업, 고품폐기물관리 기기 제조업,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선 및 정화기기 제조업, 소음 및 진동 저감장치 제조업,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장치 제조업, 수도사업 관련업 등

<표 I-7> 정부의 주요 녹색성장 전략

전략별	선정분야	전략 내용 및 세부지원분야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청정에너지, 화석연료 청정화, 효율 향상	○시장지향성 기술 개발, 시장창출 지원, 인프라 구축, 유망분야의 전략적 선정 ○15분야, 58개 품목, 207개 기술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시장성숙도에 따른 목표 차별화, 스타브랜드 선정, 성장동력별 맞춤형 시책 ○신재생에너지 등 17개 분야, 200개 과제, 62개 스타브랜드별 1200개 기술과제
녹색뉴딜사업	녹색SOC,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녹색생활	○자원절감형 경제 구축, 삶의 질 제고, 차세대 안전, 미래 대비 및 에너지효율 향상 ○9개 핵심사업 및 27개 연계사업
그린IT 전략	그린IT 제품개발, IT서비스 그린화, IT융합제조업 그린화 등 9개 분야	○IT의 녹색화, IT를 통한 녹색성장기반 구축, 그린IT 공감대 확산 및 전문인력양성 ○그린반도체, LED 및 OLED, 그린에너지, 에너지절감기술 상용화 등 13개 과제
녹색기술 연구개발 전략	예측기술, 에너지지원기술, 고효율화기술 등 5대 분야	○녹색기술 융합화, 기초·원천연구 확대, 기존 산업 그린화·신성장동력화, 기술인프라 구축 ○ 5대 녹색기술분야, 27개 핵심기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의 재정법적 과제

2010. 3. 30. 법제연구원

서울대 법과대학
조홍식 (hcho@snu.ac.kr)

재정법·정책의 3대 목표

1. 조세부담을 인하
“低率廣源”
2. 균형재정 달성
3. 국가채무의 안정화

재정 목표 달성의 수단

- 헌법적 통제
 - “재정적자에 대한 제한”
 - “세정원칙의 정립”
 - 법률적 통제
 - 재정건전화법의 제정
 - 재정준칙의 도입
 - 재정정책위원회
- Cf. James M. Buchanan’s
- “Constitutional Economics,”
 - “Politics by Principle, not Interest”
- Cf. Symbolic Legislation
- Reaping political interest
 - Sidestepping difficult policy issues

재정 목표 달성의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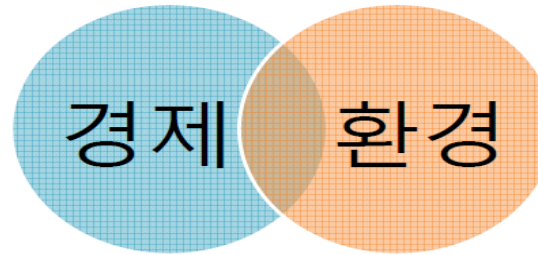
- 정치적 통제
 - 재정정책을 통한 통제
- 재정정책 =
 - ① 정치적 결단
 - Risk averse
 - Risk taking
 - ② 정책환경의 산물
 - 소규모 개방경제: 재정 건전화 필요성 ↑
 - 전세계경제와 동조화: out of control
 - 금번 금융위기의 특성:
 - 경기회복 · 과표양성화 한계
 - 강력한 세출통제·감세정책 재검토 필요성
 - ③ 정책의 수용성
 - 국민과의 소통

기후변화에 관련한 정치적 결단: “녹색성장기본법”

- MB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
- 상징적 입법(symbolic legislation)의 맹점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충실한 법률
 - 정치적인 구호성 정책의 입안 수단
 - 어려운 정책 수단의 선택을 비켜가는 수단
- “녹색성장”의 개념
-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
- 규제시스템의 적절성
- 규제권한의 배분
 - 중앙 v. 지방
 - 지경부 v. 환경부
- 탄소배출권거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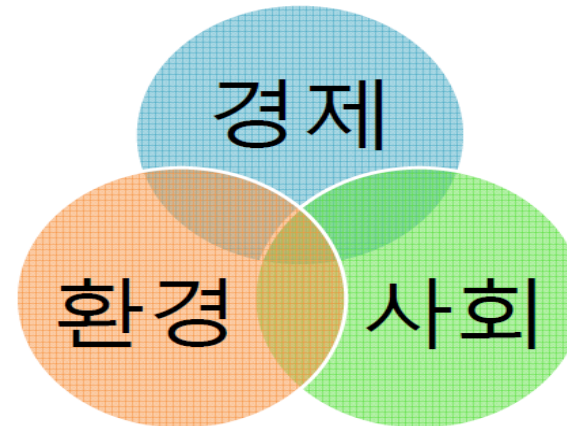
녹색성장 v. 지속가능발전

- “녹색성장(Green Growth)
 -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녹색성장 v.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를 위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녹색성장 v. 지속가능발전

- 경제와 환경의 관계
 -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적 비용을 시장 가격에 내부화
 - 경제성장과 환경훼손의 비동조화(decoupling)
 - 상충(Trade-off)에서 상보(Complementarity)로
- 사회적 형평·통합에 대한 고려 유무
 - 경제와 환경의 조화만을 추구할 뿐
 - 사회정의의 문제나 환경 피해의 계층적·지역적 집중 문제 같은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 부족
- “녹색성장”의 조세 정책에 적용될 가능성
Cf. 통화정책; 규제정책; 재정정책

녹색성장기본법상의 규제시스템

규제의 원칙

- 규제체계의 선진화
 - 녹색성장기본법 제36조
 - 규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
 -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
 - 오염원인자의 자율규제를 유도
 - 규제실태조사를 통해 중복 규제 방지

규제 수단

- 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녹색기술 촉진, 녹색금융 지원, 녹색산업 표준화
- 보조금 정책
- 조세 정책
- 정보공개
 - 보고 의무, 환경영향평가
- 온실가스감축규제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규제수단의 종류

규제수단의 유형	내용	원리 - 종류
행위 수단 (Conduct instruments)	오염원의 생산기술-공정을 규정하는 규제; 명령통제규칙 (command-and-control rules)	전통적 환경규제; 설비-공정 기준; 오염제어기술 기준(구득가능최고기술); 민사상 과실기준
가격 수단 (Price instruments;)	오염원으로 하여금 오염행위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규제; 유인책 기준 규칙 (incentive-based system)	책임 규칙(liability rule): 환경세, 보조금, 환경예치금
수량 수단 (Quantity instruments)	환경권/오염권을 배분하는 규제: 성취 기준 규칙 (performance-based standards)	재산권 규칙 (property rule): 성취기준(배출량기준), 거래 가능 배출권
정보공유 수단 (Information disclosure)	환경오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정치의 장에서 담론을 형성하도록 함	청문기회, 환경영향평가, 환경 데이터베이스

규제수단의 선택기준

- 기준
 - 1. 효율성
 - 비용효과성 (행정비용 절감을 포함)
 - 혁신유인성
 - 2. 공정성(/도덕성)
 - 효율성 기준의 선택
 - ① 명령통제 수단보다는 경제적 유인책을 선택
 - ② 보조금은 사용 자제
 - ③ 거래가능배출권보다는 환경세를 선택
- Cf. 통화정책; 규제정책;
재정정책

녹색성장기본법상의 규제의 원칙

- 규제체계의 선진화
 - 녹색성장기본법 제36조
 - 규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
 -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
 - 오염원인자의 자율규제를 유도
 - 규제실태조사를 통해 중복규제 방지
- 녹색성장기본법의 원칙이 재정정책·조세정책에 적용되는가?

녹색성장법의 규제시스템

- 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보조금 정책
- 조세 정책
- 정보공개
 - 보고 의무
 - 환경영향평가
- 온실가스감축규제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녹색성장법의 규제시스템 (1)

녹색성장의 인프라 구축

- 법제22조(녹색경제·녹색산업을 위한 원칙)
- 법제23조(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 법제24조(자원순환의 촉진)
- 법제25조(기업의 녹색경영)
- 법제2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의 촉진)
- 법제27조(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
- 법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 법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녹색성장법의 규제시스템 (2)

보조금 제도

- 법제29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 법제31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 보조금 지급
 - 신용보증
 -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감면
 - 외국인 투자 유치
- 법제33조(중소기업의 지원 등)
- 법제34조(녹색기술·녹색산업 단지 조성)
- 법제35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법의 규제시스템 (3)

조세 제도

- **법제30조(조세제도의 운영)**

“정부는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제도를 운영하여야 ”

- **법제31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감면할 수”

규제권한의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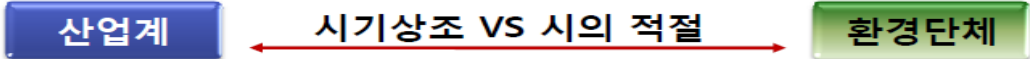
- 관련기관 사이의 관계
 - 국무회의
 - 국무총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
 - 녹색성장위원회
 - 분과위원회
 - 녹색성장기획단
 - 기후변화에너지센터
 - 녹색기술전략센터
 - 녹색기술전략센터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
 - 지방녹색성장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장
- “재정정책위원회?”
- Complexity Theory
 - 복잡성 ↑ 시스템의 생존
가능성 ↓
 - 가급적 기존의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온실가스 감축규제 (3)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 배출권거래제
 - “배출되는 탄소만큼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강제”
- 법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 “배출허용총량 설정”
 -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 법률로 정함”
 -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평가



뜨거운 감자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논란 가열 — 메디컬투데이 2009-06-15 07:38:21 발행

'시의 적절 VS 시기상조'...탄소 배출통계 확보 '시급'

【메디컬투데이 박영리 기자】 정부가 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법안에 포함된 온실가스 '총량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 산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녹색'과 '성장'이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이 그러하듯이 산업계는 강한 '재찍'이 될 것을 염려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시민단체들은 더욱 강화돼 규정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Cap & Trade'라고 불리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Cap)을 각각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남는 허용량에 대해서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Trade) 방식을 말한다.

이미 EU(유럽연합)는 2007년 11월 유럽 취항 항공사를 탄소배출권 거래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 시켜 가장 먼저 선두에 나섰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1년까지 CO2 배출량을 현재보다 10% 낮추지 못하면 배출권을 강제로 구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파급효과는 일단 한 국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영공을 사용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도 적용되기에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너도나도 탄소거래제 도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 제도를 둘러싸고 산업계의 반발은 아직 거세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박태진 원장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신규투자를 원천하고 원가를 상승시키며 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를 유발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규제보다는 국가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원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토의정서'에서 이미 그 선례가 있는 탄소감축목표 설정은 일각에서 실패한 제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 돼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막는데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실제 할당량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탄소할당량은 곧 'باع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동북권의 12개 국가는 아무 일도 안하고 온실가스 할당량이 남아돌게 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또 온열 배출량 저감에 높은 한계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실제 배출량을 감축하는 대신 타 오염원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오염배출을 계속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일부의 경우, 우크라이나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용해서 그 대금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에다만 사용할 것이라고 고리표를 붙였던 것이나 아예 처음부터 옵션(경매)에서 논하고 필요한 만큼 사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들도 제시되고 있다.

온실 저감에 정부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구현한 이 법안 제46조 제1항을 살펴보면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제적으로 평가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거래하는 제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자연환경국민신탁 전정경 대표의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영국은 본 조항에 넣고 일부는 행정계획에 임의했는데 우리는 일부는 모델을 행정계획에 들어있고 법안에 담고 있지 않다"며 "정부만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보일 것이 아니라 법률에 담야 국회 통과 후 정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짊어지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법안에 도입될 배출권거래제에 관하여서 전 대표의사는 "시금줄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시장과 공동체 상호간에 환경 재산권이 정확하게 설정되고 거래되도록 법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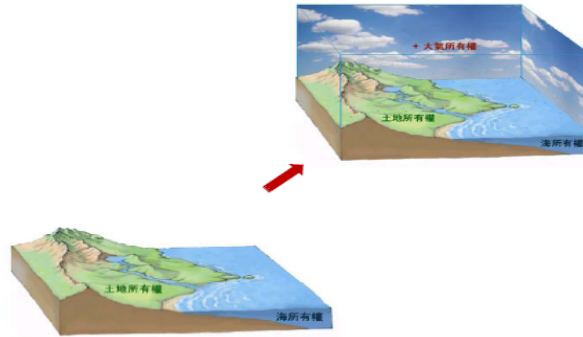
이와 이 조항에 대해 "등"이라는 문구 때문에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등을 포함한 여러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정부가 일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탄소 인벤토리'란 한 기업이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일종의 통계시스템이다.

일각 관료형 환경운동연합 에넌지김준봉 주선홍 간사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면 제도 정착을 위해서나 적용하는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번에 도입돼야 하는 것은 맞고 무엇보다 배출통계자료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주 간사는 "완전히 전신 없이 '등'의 표현은 사실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총량을 너무 높게 잡아서 실질적으로 배출권이 남아돌거나 하는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영리 기자 lee@mdtoday.co.kr

배출권 설정의 효과



쓰레기매립장 'CO₂ 배출권' 지분 다툼

대구시·지역난방공사·대구에너지환경, 중재판정 받아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봉천리 대구 쓰레기매립장, 입구에 공 모양의 커다란 탱크가 보인다. 민간업체인 대구에너지환경주의 메탄가스 정제 시설이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에 포함된 수분·먼지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정제된 메탄가스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 판매된다. 메탄가스는 지름 40cm·길이 7.9km의 관을 통해 운반되며 보일러 연료로 사용된다.

메탄가스는 대표적인 지구온난화 물질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메탄가스를 재활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이산화탄소(CO₂) 배출권'을 확보했다. 대기오염 물질인 메탄가스를 재활용한 점을 인정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이 CO₂ 배출권을 발행한 것이다. 확보한 배출권의 판매 예상 수입(UNFCCC에 등록된 2년간 합계)은 1700억원.

대구시·대구에너지환경·한국지역

공동사업으로 배출권 1700억 판매액 배분 비율 놓고 공방

대구시 88%, 난방공사 10% 인정

난방공사가 손을 얹으면서 자원재활용과 배출권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UNFCCC에 배출권 발행 신청을 앞두고 배분 비율을 상하년했다. 선례가 없어 고민

하던 이들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협의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9월 제출한 중재 신청에서 지역난방공사는 배출권 판매액의 50%를, 대구에너지환경은 30%를 각각 요구했다. 반면 이 사업을 주도한 대구시는 이들이 메탄가스를 활용하면서 추가로 투자한 시설비와 인건비의 비율을 신청해 각각 1.15%와 0.76%만 인정했다. 액수가 많다 보니 공방도 치열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법무법인 '김&장'을, 대구에너지환경은 법무법인 '윤&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맞서 대구시도 CO₂ 배출권 관련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리더스'에 사건을 맡겼다. 네 차례 심리를 거쳐 지난 2일 판정이 나왔다. 중재원이 인정한 지분은 지역난방

공사 10.33%, 대구에너지환경 1.16%였다. 대구시의 지분은 88.51%로 결정됐다. 중재원은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메탄가스 보일러의 온수탱크 설치금액이나 메탄가스 재활용 사업에 대한 무형의 기여도 5%를 가산했다. 또 대구에너지환경은 메탄가스 자원화시설에 들어간 전체 투자액 중 배출권 확보를 위해 추가로 투자한 시설비의 비율을 배분율로 인정했다.

당사자들은 "판공소법집 못지않게 판정에 승복하기로 약속한 만큼 받아들여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서정길 자원순환과장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었다"며 "공동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중재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삼 기자 hongss@joongang.co.kr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의 대구에너지환경 직원이 메탄가스 정제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회사는 대구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의 불순물을 제거한 뒤 연료로 판매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중재(仲裁)제도=민사·상사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제도. 판정은 중재원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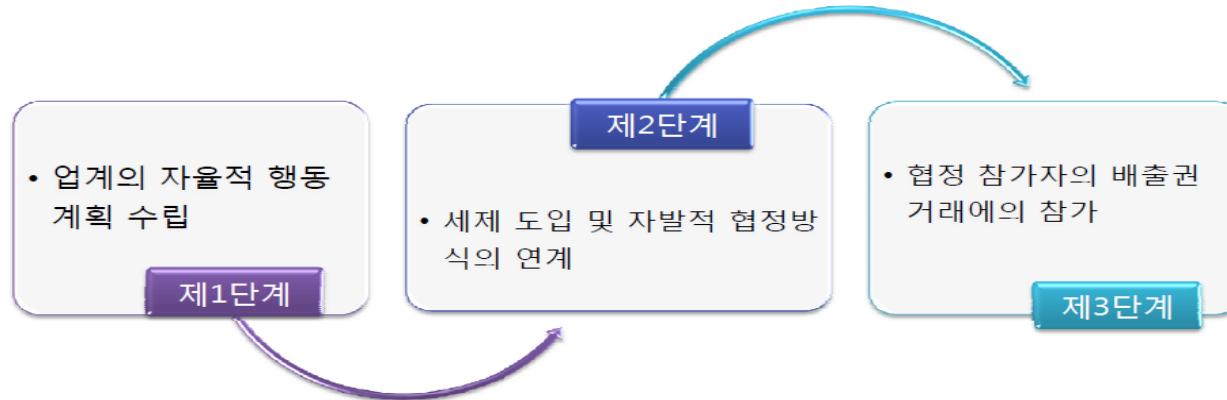
배출권거래제/탄소세 설계 제언 (1) 제약요소와 정책조합 (policy-m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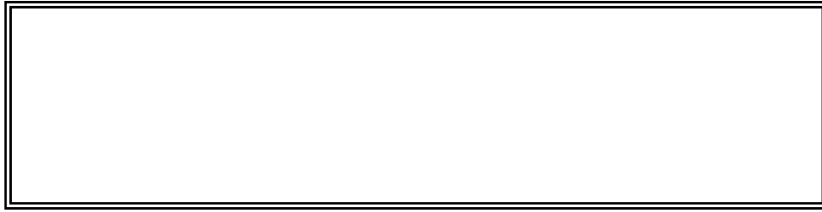
- 정책 환경
 - 탄소집약적 산업구조
 - 통계자료 부족
- 거센 규제저항
 - 시민의 높은 권리의식
 - 정부에 맞서는 기업
- 헌법적 제약요소
 - 헌법상 환경권
 - 재산권 보장
 - 직업행사의 자유
 - 평등의 원칙



배출권거래제/탄소세 설계 제언 (2) 단계적 접근 (legal incrementalism)

- 이해관계인 모두가 참여하는 절차
- 공정한 기준에 의한 책임분담





토 론 문

신성장동력 추진계획

고지숙 (국무총리실 사무관)

- 글로벌화의 진전, 에너지·환경 문제, 기술혁신 가속화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
 - 자원개발 및 기후변화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부각
 - 지식과 기술혁신이 성장의 원동력으로 **지식기반경제와 융합 기술시대를 선도**

-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고부가·친환경 산업구조로 이행 필요**
 - 수익창출 모델도 그간의 **‘쫓아가기형(Catch-up model)’**에서 **‘선도형(Trend-setter model)’**으로 전환
 - 이종 산업간 융합을 통한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제규모 확대 필요
 - 환경·에너지 문제해결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녹색성장을 구현**

□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전략 수립 필요

- 각국 정부는 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R&D 투자 등 신산업 창출에 주력

* 미국 : 'New Apollo Program'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이슈 선점을 위해 청정에너지 개발에 대규모 투자 계획(향후 10년간 1,500억불)



□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를 망라한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비전과 발전전략 발표('09.1.13)

- 신성장동력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순회 설명회」(5회) 개최(총리 및 관계부처 참석, '09.2.1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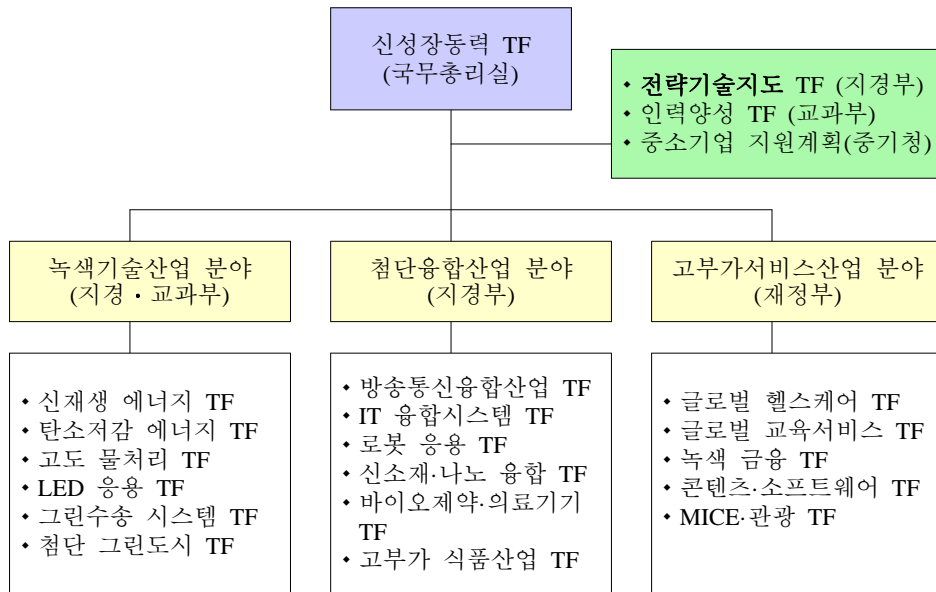
□ 신성장동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TF」를 중심으로 17개 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09.2월부터 신성장동력 TF(단장: 총리실 사무차장) 4회 개최, 세부 계획별 검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계획 마련

- 17개 동력별로 「민·관 TF」를 구성하여 민간측 의견수렴
- 마련된 실무안에 대해 세계 등 쟁점사항과 중장기('09~'13) 재정투자규모에 대한 부처간 협의

- 동력별 계획과 더불어 기능별 대책으로 신성장동력 분야 「전략기술지도」, 「인력양성 방안」 및 「중소기업분야 지원계획」 수립

<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전략 수립체계 >



- (민관 역할분담) 민관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토대로 계획 수립
 - (정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수요·제도개선 등 초기시장 창출, 고위험 원천 기술개발 등 ‘민간부문의 투자환경 조성’에 역점

-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활성화, 신규 고용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 필요
- (산업별·기능별 대책마련) 민간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역할을 중심으로 산업별(동력별), 기능별로 실행계획 제시
 - (산업별 대책) 산업별 여건에 따라 R&D, 인력양성, 시범사업, 제도개선, 인프라 등 정책수단의 우선순위를 조율, 차별화된 전략 마련 : 별도보고

- ▲ 녹색기술산업 분야 : 핵심원천기술 개발, 공공수요 활용 등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에 역점
- ▲ 첨단융합산업 분야 : 시장수요를 반영한 응용 기술개발 및 융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중점
- ▲ 고부가서비스 분야 :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 조성에 중점

- (기능별 대책) 17개 신성장동력의 정책수단을 기능별로 심층재분석하여 상호 연계성을 제고하고, 필요시 별도 정책으로 제시(기술, 인력, 중소기업 지원 등)

- ▲ 기술개발 : 체계적인 기술개발 방향설정과 기술간 연관구조를 제시하기 위해 「전략기술지도」(주관: 지경부) 마련
- ▲ 인력양성 : 분야별 인력양성 대책을 종합분석하고, 공통적인 인력양성 기반 구축을 위한 「인력양성종합대책」(주관: 교과부) 수립
- ▲ 시범사업 등 재정사업 : 공공수요와 시범사업 등을 통한 초기 시장창출 사업은 녹색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마련

- ▲ **제도개선** : 서비스분야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과 연계하여 마련하고, 여타 분야는 범정부 규제개선과제와 연계
- ▲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 분야에 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참여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전략」 별도 수립

1. 17

□ 17개 신성장동력 **총 200개 과제 발굴**, 향후 5년간('09~'13) 정부 투자계획은 **24.5조원** 규모(녹색뉴딜 재정소요 일부 포함)

※ 표기된 예산은 전부 각 사업부처 소요치 기준

- (녹색기술산업 분야) 6개 동력에 대해 총 79개 과제, 향후 5년간 재정투자는 7.5조원 규모
- (첨단융합산업 분야) 6개 동력에 대해 총 62개 과제, 향후 5년간 재정투자는 12.2조원 규모
-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5개 동력에 대해 총 59개 과제, 향후 5년간 재정투자는 4.9조원 규모

<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 과제 및 재정투자 규모 >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계
R&D	42개(3.9조)	25개(8.0조)	5개(1.4조)	72개(13.4조)
재정사업	17개(3.5조)	29개(3.8조)	25개(3.3조)	71개(10.5조)
인력양성	7개(0.1조)	4개(0.4조)	4개(0.1조)	15개(0.6조)
제도개선	9개	4개	22개	35개
기타	4개	-	3개	7개
합계()	79개(7.5조)	62개(12.2조)	59개(4.9조)	200개(24.5조)

2.

□ (전략기술지도) 향후 10년 이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13개 신성장동력에 대한 핵심기술과 연차별 R&D 전략 수립

* R&D과제가 도출되지 않는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관광 등 4개 신성장동력은 수립대상에서 제외

- 시장성을 고려하여 신성장동력별 스타 브랜드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분야에서 민·관의 역할분담 방안 제시
- 13개 신성장동력에서 62개 스타 브랜드와 1,214개의 핵심기술 도출

신성장동력	스타 브랜드	전략품목	핵심기술
신재생에너지 (예시) ...	태양전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박형 태양전지/모듈화 기술 고순도 실리콘 원료제조 기술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
	연료전지
	
13개 분야	62	221	1,214

□ (인력양성) 신성장동력 분야 향후 10년간('09~'18년) 약 300만명의 신규인력 수요가 예상되어, 핵심인력(약 70만명) 양성방안 마련

* 녹색기술산업 분야 74만명, 첨단융합산업 분야 153만명, 고부가서비스 분야 69만명의 인력수요가 요구, 석·박사급인력은 약 62만명이 필요

○ 산업별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 향후 10년간 약 20만명 규모의 전문인력 양성 예정

* 예시)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U-City 전문인력 양성, 로봇 전문인력 양성 등

○ 중장기 성장동력분야 인력소요(약 50만명*)에 대응하여 교과부 사업을 통해 인력양성 기반 구축(4개 과제, 19개 사업)

* 예시) 다학제간 선도인력양성, 학제간 교육·협동연구 지원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간 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 지원전략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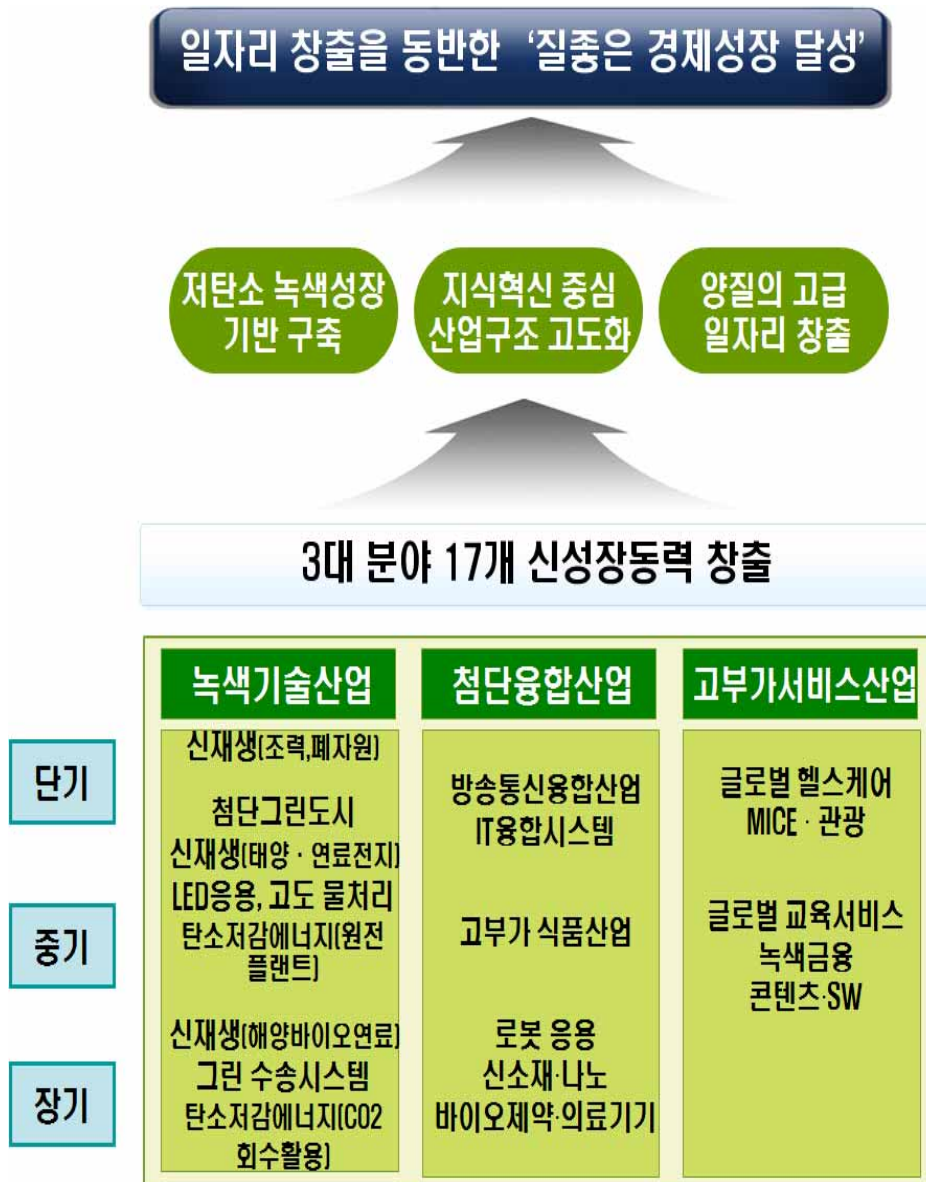
- 신성장동력 총 200개 과제 중 중소기업과 관련성이 높은 과제는 105개(전체 53%)로서, 중소기업의 참여가능성을 적극 제고
- R&D, 상용화, 사업화 등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전주기에 걸친 밀착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
- 중소기업 지원 특별 정책과제로서 기술개발 지원, 신성장동력 분야 정책금융 확대,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기반 마련 등 총 5개 과제* 발굴

* 예시) 신성장분야 중소기업 투자 촉진,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 금융 확대 등

< 참고 : 중소기업 진입여건 분석 >

- ◆ (녹색기술산업)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첨단도시 분야는 부품·소재 관련분야가 많아 중소기업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유리
 - * 다만,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분야 등은 사업리스크가 크고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이 접근하는데 일정한 한계
- ◆ (첨단융합산업) 다품종·소량생산, 독립상품, 부품소재분야가 혼재해 있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접근성이 용이
- ◆ (고부가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유의 유연성으로 주도적 활동이 가능한 분야
- ※ 신성장동력 기술로드맵을 통해 발굴된 1,200여개 핵심기술 중 약 25%인 300여개 핵심기술이 중소기업 참여가 가능

3.





□ 범정부적으로 추진실적·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정부내 부처평가에 반영하여 철저한 실행력 담보

- (17개 동력별) 주관부처 중심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보고(간사부처 및 국무총리실)
 - 동력별 민관 TF를 개최(분기별 1회)하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3대 분야별) 간사부처 주관으로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
- (총괄)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점검
 -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정부부처 평가에 반영
 -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

토 론 문

조외영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사무관)

□ '09. 1월 정부는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발굴

- 이를 토대로 5~10년 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관련부처에서 추진중

□ 정부의 **신성장동력¹⁾** 사업 추진 시 새로운 신성장동력 발굴(what) 보다는, 발굴된 유망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how)이 보다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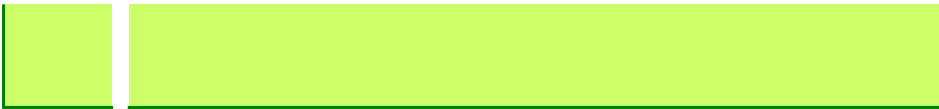
- 2003년부터 추진한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사업의 경우 초기 방향 설정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이후 구체적인 육성 전략이 미비
- **R&D** 지원 확대, 초기 시장 **창출** 지원 및 세계 소비자의 수요, 기술흐름, 시장변화 등의 주기적 조사·분석이 필요

□ 이에 신성장동력 분야 **활성화** 직접 지원 및 **전후방산업**의 동반 성장 유인을 위한 지원 필요

1) 신성장동력 : 성장성·성공가능성·과급효과가 크고 우리경제에 활력을 찾기 위해 육성해야 하는 유망 산업(제품)군

- 정부·민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역할분담을 통한 성장동력 육성으로 중소기업에 새로운 사업적 기회를 제공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 극대화

◇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신성장동력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의 극복 및 성장 잠재력 제고



-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목표, 국민 복지증진 기여에 필요한 기술개발, 유망산업 선정 및 중점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육성이라는 공통점이 존재

구 분	특 징
미국 (첨단기술 개발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 이용가치에 초점 ▪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 고위험 유망기술 지원 * 기초연구와 제품개발 중간 단계에 놓여있는 경쟁 전 단계의 위험이 큰 기술 중 상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
일본 (신산업 창조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고부가가치형 산업군 육성 ▪ 지역재생을 위한 중점정책, 인재 육성, 연구개발, 지적재산보호 등
대만 (양조쌍성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이 높은 산업 강화(양조계획) : 반도체, 영상 디스플레이 ▪ 신규 유망산업 발굴(쌍성계획) : 디지털 콘텐츠, 생명공학

구 분	특 징
독일 (첨단기술 전략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미래유망분야를 과학기술 관련 모든 부처들이 참여하여 선정 및 체계적 지원책 마련 ▪ 우주기술과 에너지기술에 가장 많은 예산 책정
영국 (연구회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수행
핀란드 (TEKES 기술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유망기술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과 전문가 서비스가 결합된 패키지 프로그램 ▪ 고객지향적 및 시장지향적 접근이 필요한 응용중점영역과 잠재력 창출 및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술중점영역으로 나누어 지원
EU (Lead Market Initia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집행위를 통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선도시장 선정 ▪ 법령정비, 규제환경 개선, 표준화 등으로 수요창출

대부분의 국가에서 향후 10년 내외의 가까운 미래에 세계시장에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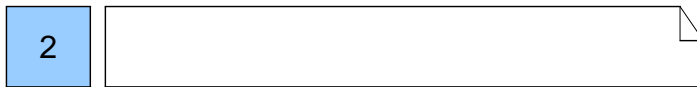
1

1] 규제 개혁

- ①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규제 개선의 지속 추진
- ②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확대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해당산업의 규제수준을 우선 검토

② 국내기업의 글로벌 사업기회 확대

- ① 신성장동력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및 지원 실시
 - ② 신성장동력육성 추진시 해외진출을 감안한 R&D, 상용화 및 서비스개발 추진을 통해 국내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지원
 - ③ 신성장동력별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글로벌 사업 지원
- *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제표준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의 학회유치, 국제표준 활동지원, 전문가 양성 등 국제표준 지원 확대



① 기본방향

- ① 다양한 공공분야 시범사업으로 초기수요 창출 및 산업분야 성공 모델 도출·확산
- ② 인위적인 시장창출 지원보다는 우수한 기술의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리스크 및 비용 경감에 비중을 둔 간접지원 강화
- ③ 법·제도상의 우선구매 등의 간접지원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우수기술 제품의 수요를 확대

② 중점 추진방안

- ① 산업별 특성에 맞는 상용화 및 시장창출 전략 마련
- * 예시) 신산업 분야 : 수요처의 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정부조달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적극 활용

② 기술집약 제품군 대상 상용화 및 디자인 서비스 모델 발굴 지원

○ 우수유망 기술의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장창출 컨설팅 실시

③ 서비스 분야 고급인력 양성

① (필요성) 경제가 발전할수록 新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인재, 브랜드, 지적재산 등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증가

○ 서비스산업은 인적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고용흡수력이 높으며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

② 추진방안 (예시)

○ IT기반 디지털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 우리의 우수한 IT기반과 풍부한 디자인 인력을 결합, 디자인산업의 디지털화 유도 및 세계 디지털 디자인시장 선도

○ 스마트물류(RFID/USN) 전문 인력 양성

- 산업 인력간의 교류, 특히 IT 인력의 대거 이동을 통해 스마트물류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

- 국제 협력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을 통해 기술 수준 향상

3	R&D
---	-----

①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우선 투자

① 신성장동력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집중

○ 신성장동력 육성산업 위주로 핵심기술 개발 대상과 투자 우선순위 설정

② 신성장동력 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 선도효과 유발을 위해 신산업 분야 등에서 민간의 독자적 투자가 어려운 원천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③ 상용화 기술개발 수준의 완성도 제고

- 개발기술의 수요와 상용화 목표를 반영한 R&D 기획·관리 추진

② 「융합형 연구」 촉진 시스템으로 전환

① 기술의 융복합화 트렌드에 따라 단일 기술제품의 융합형으로 전환이 촉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 필요

② 급변하는 국내외 융합 기술, 시장 및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예측, 분석을 위한 융합 정보제공 기반 구축

	가
--	---

국가	에너지·환경	수송 시스템	New IT	융합 신산업	바이오	지식 서비스	기타
미국			전자/컴퓨터/통신 정보기술		생명공학		첨단소재·화학물 제조 기타
일본	연료전지 환경·에너지 기기/서비스		정보가전	로봇		컨텐츠 건강·복지 기기/서비스 비즈니스 지원	

국가	에너지·환경	수송 시스템	New IT	융합 신산업	바이오	지식 서비스	기타
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명공학 기술	디지털컨텐츠	
독일	에너지기술 환경기술	운송 및 교통 기술	정보통신 기술 마이크로 시스템기술	광기술 소재기술 나노기술	보건연구 및 의료 기술 식물관련 생명공학 기술	서비스지 원기술	안전기술 우주기술 해양기술 생인기술
영국	에너지				생물과학 보건의료		자연환경 기반분야
핀란드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기술	소재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 기술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개념 갱신 보안안전 노동여가
EU	자원재활용 재생에너지			산업용 섬유	바이오제품	e-Health	건설

□ 정책적 시사점

- 신성장동력의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유인하기 위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제반 정책 강구
- 고유가, 기후변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환경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